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22 Autumn Vol.164

04

Focus On Media

언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언

46

특별기획

미성년 '잊혀질 권리'가 알려주는
정보사회의 속성

86

해외통신원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악의' 논쟁
사라 페일린 v. 뉴욕타임스 판결과 의의



언론중재

2022 Autumn vol.164

인쇄

2022년 9월 27일

발행

2022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FOCUS ON MEDIA

언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언

1.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04

이승철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2. 취재관행과 보도행태 점검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방안 18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3. 슬기로운 시정권고 활용법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시정권고 제도 32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특별기획

미성년 '잊혀질 권리'가 알려주는 정보사회의 속성 46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특별기고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현황과 방향성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54

해외통신원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악의' 논쟁 사라 페일린 v. 뉴욕타임스 판결과 악의

문영은 아리조나 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박사후 연구원

8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 규제냐, 자율이나를 넘어서

박찬경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62

칼럼

가을은 바이올린 선율처럼

박종권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94

판례토크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74

위원회 News

100

Journalism & Ethics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 2 > “비판하면서 해명할 기회도 안줘..”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80



01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이승철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탈진실사회와 유튜브

‘신문에서 읽었어요’, ‘TV에서 봤어요’

한마디로 이 말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전통 매체인 신문과 TV가 대중으로부터 막강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다. 지금은 어떨까. 한국일보가 8월 기획기사 ‘한달 르포’에서 소개한 김승민 씨(60·가명)의 말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상징적이다.¹⁾

“같은 쪽 사람들이니까 믿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가 자신이 사는 경기도 광명사에서 유명 진보 유튜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로 가는 버스 속에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씨는 “제도권 언론만 접했다면 대통령 부부 비리를 지금처럼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유튜브 내용을 모두 믿느냐는 물음에 “사실 여부에 대해선 내가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같은 편’을 믿음의 근거로 들었다. 유튜브 방송의 위력과 함께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대중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의 말은 진실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누구 편인가가 더 중요한 ‘탈진실사회(post-truth society)’로 이미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탈진실’이란 단어는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그해의 단어로 선정해 등재하면서 정식단어로 인정받았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 ‘탈진실’이란 단어를 ‘여론형성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감성과 개인의 믿음이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가르키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유튜브 위력은 진보를 지향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2020년도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되는 바다.²⁾ 시사인은 여론조사기관인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유튜브가 13%로 방송과 신문을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2위는 11.4%로 포털인 네이버가 차지했다. 유튜브의 신뢰도 상승은 2019년에도 12.4%로 2위를 차지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을 주도해 2017년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해오던 JTBC는 2019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서 4위로 미끄러졌다. 이러한 유튜브의 위력에 대해 이종명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1) 이정원·조소진·심희보 (2022. 8. 26). 일용직 뛰며 ‘진보 유튜브’ 후원... 틈만 나면尹자택 앞 집회 참석. <한국일보>.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910520000291?cid=NA>

2) 김동인 (2020. 10. 9). 신문 대신 유튜브 보고, ‘성향 같아서 신뢰’. <시사인>. URL: <https://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78>

과 강사는 관훈저널 2022년 봄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지형의 격변과 보수 유튜버들의 득세,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싼 정치지형의 회귀와 진보 유튜버의 약진이 주요 변곡점’이라고 지적했다.

반향실 효과와 진영 싸움

앞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

요즈음은 ‘신문에서 읽었다’고 하면 심중팔구 ‘어느 신문이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TV도 비슷하다. ‘공중파냐, 종편이냐’는 물음이 뒤를 잇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실을 알기 위해 진보지인 한·경·대(한겨레, 경향, 대한매일)³⁾, 보수지인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중 하나씩 읽고 있다는 얘기가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대중이 갈수록 편이 나누어지고 있다. 2016년 무렵부터 등장한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란 말이 이같은 현상을 설명해준다. 반향실 효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소리가 반복해서 울리는 것처럼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반복해서 메아리쳐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말은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확증편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반향실 효과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극단화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 종교적 극단주의, 국수적 민족주의도 반향실 효과의 산물이다. 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의 최근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반향실 효과를 잘 보여준다.⁴⁾ 한국일보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진보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의 보도 내용에 허위사실을 추가해 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형태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1%는 ‘가세연을 출처로 한 가짜뉴스를 신뢰했다. 신뢰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보수(43.2%)가 진보(10.6%)보다 4배 정도 높았다. 보수 성향일수록 가세연을 출처로 한 가짜뉴스를 더 쉽게 믿은 것이다. 이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사실 자체가 믿음직스러워서’(42.0%), ‘제보자가 등장했기 때문’(31.9%) 등을 들었다.

3) 지금은 ‘한·경·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오는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한매일’(서울신문)을 대신해 들어간다.

4) 조소진·이정원·박서영 (2022. 8. 26). 진보도 보수도 ‘자기 진영’ 유튜브 가짜뉴스에 ‘맹신 경향’. 〈한국일보〉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723480004933?di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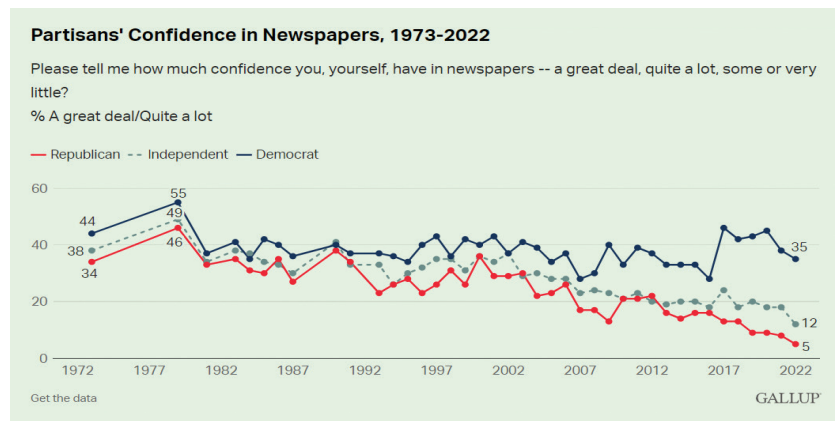
‘서울의 소리를 출처로 한 가짜뉴스’를 신뢰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3.7%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이 진보(45.2%)일수록, 보수(11.3%) 성향보다 ‘서울의 소리를 출처로 한 가짜뉴스’를 더 신뢰했다. 응답자들은 ‘제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에’(49.5%), ‘사실 자체가 믿음직스러워서’(33.9%) 신뢰했다고 답했다.

유튜브는 앞으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세대간 갈등을 확대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은 결국 진영 싸움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가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의 반향실 효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22년 7월 발표한 미 언론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은 올해 5%, 민주당 지지층은 35%가 신문을 ‘매우’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무당층은 12%가 신뢰를 보였다. TV 뉴스 역시 공화당 지지층의 6%만이 신뢰했고, 민주당과 무당층은 각각 20%와 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갤럽의 연례 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하향 추세이며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⁵⁾

<그림 1> 갤럽 미 정당별 신문 신뢰도 추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당파에 따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영방송인 NPR/PBS가 여론조사기관인 매리스트에

5) Mgan Brenan (2022, 7, 18). Media Confidence Ratings at Record Lows. (Gallup). URL: <https://news.gallup.com/poll/394817/media-confidence-ratings-record-lows.aspx>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6일 이른바 ‘의회 난입사건’과 관련해 다수인 57%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은 92%, 무당파는 57%였으나 공화당원들은 18%밖에 되지 않았다.⁶⁾

‘의회 난입사건은 소요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냐’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원 86%, 공화당원 12%, 무당파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집회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정치적 행위였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원 5%, 공화당원 40%, 무당파 14%가 긍정했다.

이 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 하원의 의회 난입사건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원들은 80%, 공화당원들은 과반에 못 미치는 44%, 무당파는 55%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는 58%였다. 한마디로 자기 편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관대한 일종의 반향실 효과가 아닐까 싶다. PBS는 미 하원 청문회가 시작된 7월 21일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전통언론의 위기인가

1인 매체인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포함되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논의를 접어두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레기’라는 말이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등장해 지금도 언론을 깎아내리는 대표적 용어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1980년대 초 수습기자일 때 선배들로부터 ‘기자(記者)’란 ‘자’의 훈이 ‘놈’이라는 점을 들어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 쓰는 놈’이라는 말을 귀가 났도록 들었다.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고 기사를 발굴하라는 얘기였을 터다. 24시간 취재와 기사작성에 매달려야 하는 삶이 몹시 고달팠다는 기억이 난다. 그래도 선배들은 경찰 간부 등 취재원들을 만날 때 신문사를 대표해 나온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기자로서 명예 지키기를 강조했다. 기자들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직업에 대한 긍지는 대단했다.

당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일반인들도 일정 부분 언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론을 신뢰했다고 생각한다.

6) Domenico Montanaro (2022. 7. 21). A majority thinks Trump is to blame for Jan. 6 but won't face charges, poll finds. (npr). URL: <https://www.npr.org/2022/07/21/1112546450/a-majority-thinks-trump-is-to-blame-for-jan-6-but-wont-face-charges-poll-finds>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언론매체 전체의 신뢰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24로 보통 정도다.⁷⁾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매우' 4.2%, '약간' 신뢰한다 37.6%로 41.8%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 는 낙제점수다. 이 수치는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의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매체별로는 신문의 신뢰도가 3.37, TV가 3.74, 라디오 3.27, 잡지 2.74, 포털 3.50, SNS 2.88, 유튜브 2.63 등으로 TV와 신문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TV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인들에게 활자 보다는 영상매체가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주기 때문이다.

<표 1> 뉴스 미디어 유형별 신뢰도 추이(2010~2021)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TV	자상파	4.04	3.83	3.76	4.13	3.90	4.15	3.85	4.07	3.80	3.49	3.74
	종합편성	-	-	3.43	3.72	3.60	3.85	3.72	4.02	3.75		
	보도전문	3.90	3.69	3.61	3.84	3.70	3.83	3.74	3.94	3.68		
신문	전국지	3.79	3.44	3.37	3.65	3.43	3.83	3.39	3.57	3.47	3.21	3.37
	경제전문지	-	-	-	3.48	3.45	3.72	3.46	3.67	3.49		
	지역일간	3.55	3.31	3.23	3.34	3.27	3.52	3.25	3.45	3.25		
	지역주간	3.36	3.23	3.13	3.21	3.19	3.47	3.22	3.50	3.24		
뉴스통신		-	-	-	3.61	3.47	3.71	3.48	3.75	3.47	-	-
시사잡지		3.48	3.28	3.14	3.17	3.16	3.37	3.17	3.38	3.15	2.62	2.74
라디오		3.60	3.54	3.41	3.47	3.42	3.58	3.45	3.64	3.43	3.19	3.27
인터넷	포털	-	-	-	3.58	3.50	3.57	3.50	3.59	3.43	3.19	3.50
	언론사닷컴	3.49	3.28	3.18	3.23	3.14	3.37	3.18	3.27	3.02	2.80	3.22
	인터넷신문											
	메신저	-	-	-	-	-	-	3.14	3.03	2.99	2.66	2.94
	SNS	-	-	-	-	-	-	3.09	2.94	2.90	2.61	2.88
	유튜브	-	-	-	-	-	-	-	-	-	-	2.63
언론전반		-	-	3.26	3.40	3.28	3.51	3.36	3.62	3.58	-	3.2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례 언론 수용자 조사. 표본수 5,000~5,128명

7) 5점 척도란 5점을 만점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산정해 평균을 낸 것이다.

신문의 신뢰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세하지만 TV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3년 조사에서는 신문에 대해 5점 척도로 3.55였다. TV와 라디오가 각각 3.52, 잡지 3.22 순이었다. 5년 후인 1998년 조사에서는 TV가 3.29로 1위로 올라선 뒤부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결과는 더 부정적이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해마다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발표한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연례행사로 국내언론은 동네북이 되고 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6개국 중 자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도는 30%로 40위이다. 한국이 조사대상에 처음 포함된 2016년에는 신뢰도가 22%로 조사대상 26개 국가 중 25위였으며 그 다음 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4년 연속 꼴찌였다. 2021년 32%로 조사 대상 46개국 중 38위로 꼴찌에서 벗어났으며 올해는 신뢰도가 2%p 하락하면서 다시 순위가 두 단계 뒤로 밀렸다.

신뢰도 조사의 한계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과연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나? 아무래도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말 발표한 ‘언론수용자 조사 2021’에서 유튜브의 신뢰도 조사는 5점 척도로 2.63이었다. 유튜브의 신뢰도를 1위로 꼽은 시사인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결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1위인 핀란드(69%)를 비롯해 덴마크(58%), 노르웨이·네덜란드(56%) 등 유럽국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에 포함된 아프리카 3개국 모두가 5위 이내에 들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61%), 나이지리아(58%), 케냐(57%)가 꼴찌인 미국(26%), 프랑스(29%), 영국(34%)보다 언론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것인가.

각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과 문화, 그리고 조사 주체와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순서를 매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한 신뢰도 조사는 각국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정도로 여기면 어떨까 싶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이터 연구소도 2018년 보고서에서 뉴스 이해를 의미하는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시청률과 신뢰도의 차이

네이버가 전하는 닐슨코리아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뉴스는 공중파 중에서는 KBS의 메인 뉴스가 10%를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독보적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MBC와 SBS의 메인 뉴스는 2~4%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⁸⁾ 종편은 TV조선의 '9시 뉴스'가 가장 높다. 시청률이 4~6%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MBN의 '뉴스7'이 다소 앞서며 채널 A의 '뉴스A'와 JTBC의 '뉴스룸'은 2%대 안팎에서 엇치락뒤치락한다. 보도전문 채널은 연합뉴스TV와 YTN은 1%대에 머무른다.

그런데 신뢰도는 시청률과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수용자조사에서 신뢰도는 KBS 23.0%, MBC 12.4%, YTN 11.4%, JTBC 9.1%, SBS 6.6%, TV조선 5.4%, 연합뉴스 TV 3.4% 등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로이터 연구소 조사 발표와 비슷하다. 로이터 조사를 대행하는 곳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왜 그럴까? 로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른바 진보성향의 방송사들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은 낮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보수성향의 종편들에 대한 불신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르면 YTN 51%(불신 20%)로 가장 앞서 있고 SBS 49%(22%), KBS 49%(23%), JTBC 48%(24%), 연합뉴스 TV 47%(24%), MBC 47%(26%), MBN 39%(29%), 채널A 39%(32%), TV조선 35%(41%)순이었다. 심지어 TV조선은 불신의 비율이 오히려 6%p 높다.

로이터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설명에 시사점이 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한국의 경우 뉴스 이용자 67%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이 있다면서 그 이유로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성'을 꼽은 사람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양분된 사회가 반대 진영의 채널을 보지 않는 회피현상⁹⁾이 시청률과 신뢰도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회피현상만으로 시청률과 신뢰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신뢰도와 시청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신문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8) 닐슨코리아는 TV수상기 채널들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요즘처럼 변화한 TV 시청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TNMS는 실시간 본방송, 자사 채널 재방송, 계열사 PP 채널, 타사 PP 채널, VOD 등을 합계해 2017년부터 TTA(통합시청자수)를 산출하고 있다.

9) 회피현상은 대중들이 반복적인 중요뉴스 보도에 대해 실증을 느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회피현상이 반대성향의 언론 보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극우적인 산케이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45%로 진보지인 아사히 신문의 42%보다 다소 높았으나 불신은 14%로 아사히 신문의 23%보다 크게 낮았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추측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된다. 권위있는 진보중도지인 뉴욕 타임스는 신뢰 41%, 불신 35%로 신뢰와 불신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신뢰도 하락의 원인

문제는 한국 대중이 신문과 TV 등 전통언론의 기자들에 대해 기레기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왜 전통 언론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그 원인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 정보기술의 발전, 사회·정치적 환경과 같은 외부문제, 그리고 기성언론의 내부 문제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이 중 외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신뢰회복을 위해 다룰 수 있고, 다루어야 할 것은 언론의 내부문제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

언론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객관성이다. 우리 언론은 1961년 제정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제1항에서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했다.

객관성 문제는 사건과 의견의 분리라는 기사작성의 기본원칙으로 연결된다.

잠시 사건과 의견의 분리가 기사작성의 원칙이 되어가는 과정을 짚어보자.

근대 신문은 사실 정론지(政論紙)에서 출발했다. 1830년 대량 인쇄기가 미국으로 도입되기 전 미국에서는 소수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돈을 모아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했다. 1830년 대량 인쇄가 가능한 인쇄기가 도입되자 발행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신문사들이 난립했다. 신문사들은 1센트에 신문을 팔았다. 신문사들은 경쟁과정에서 사실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절대적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 타임스는 휘그당 당원으로 뉴욕주 의회 의원이었던 헨리 레이몬드와 은행가인 조지 존스가 1851년 창간했다. 레이몬드는 처음으로 사실과 의견 분리를 내세웠던 뉴욕 트리뷴의 기자였다. 오늘날과 같은 뉴욕 타임스의 권위는 1896년 신문사를 인수한 아돌프 시몬 슐츠버거가 고급지를 표방하면서 불편부당과 정확성, 품위, 청렴, 신뢰, 정직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뉴욕 타임스는 인수 이듬해인 1897년 초부터 지금까지 1면 제호 옆에 ‘가지 있는 기사는 모두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는 문장을 싣고 있다. 이 짧은 구절은 오늘날 뉴욕 타임스를 상징하는 얼굴이 됐다. 뉴욕 타임스는 스캔들을 작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뉴욕 타임스를 읽는 장면은 ‘품위 인증도장(a stamp of respectability)’이었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는 슐츠 가문의 자손들이 이 정신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은 우리 언론이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나연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언론들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못한 몇 가지 관행을 소개했다.¹⁰⁾

이 교수는 첫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핑계로 한 의견 남발을 꼽았다. 예로 인용문 뒤 서술에 ‘~주장했다’, ‘~요구했다’, ‘~강조했다’, ‘~머뭇거렸다’, ‘~암시했다’, ‘~선언했다’ 등을 들었다. 이들 서술어는 ‘말했다’, ‘덧붙였다’라는 중립표현으로 충분하다. 둘째 무주체 피동형 문장들이다. 예로 ‘~알려졌다’, ‘~전망된다’, ‘~전해졌다’는 표현이 있다. 셋째 주관을 객관화하기 위해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소식통, 관계자, 당국자, ~측, 심지어 A,

10) 이나연 (2021), '기사에는 사실만을 담자: 사실과 의견의 분리' (버릴 관행, 지킬 원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pp.143~149.

독립성과 공영방송

B, C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뉴욕 타임스는 제이슨 블레이어 사건 이후 익명의 취재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직속 부장에게는 실명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사실과 의견 분리라는 원칙의 실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진영 싸움을 언론이 부채질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현재 언론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쓴다고 비판하면 지나칠까.

사실과 의견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정파성 문제로 연결된다. 공영방송 제도 결국 정파성 극복문제로 연결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YTN을 포함해 집권 여당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방송계의 최고 권력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포함 2명, 여당이 지명하는 1명, 야당이 지명하는 2명으로 사실상 친정부적인 구조다. KBS 이사회는 여당 쪽 7명, 야당 쪽 4명 등 11명, MBC와 EBS는 대통령 3명, 여당 3명, 야당 3명 등 9명이다.

여당 우위의 배분구조는 2000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당들이 임원 후보자들을 개별면접까지 한다고 한다. 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KBS 이사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MBC와 E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

사장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선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바탕 방송계가 몸살을 앓는 이유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벌어지지만, 국회는 정치적 득실만 따질 뿐 진정으로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영국 BBC트러스트(이사회)처럼 구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영국의 경우 존 리스라는 방송사업자가 1927년부터 정치인들에게 대항해 독립을 지켜낸 결과다. 독일 ZDF처럼 이사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우리처럼 사회가 극명하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언론계가 제대로 잡아야 할 문제다.

단순한 말의 전달자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언론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가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리 언론이 취재원 특히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증계방송할 뿐이지 그 말에 담긴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¹¹⁾ 이러한 보도 관행은 저급하고 선정적이며 갈등조장적이다. 정파적 구도를 강화할 뿐 건강한 여론지형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

1990년대 초 정치부 말진 기자 시절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같이 큰 기사다. 그런데 선배나 데스크에 보고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신문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 생각을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기사만 아니면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이때다. 당시 신문에 가십난이 있어서 신인 정치인들이 가십난에 실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의 사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 정치인들은 더욱 자극적인 말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펴면 언론은 이를 퍼나르기 바쁘다.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SNS가 선전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관행은 가십 기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해도 신변잡기 털기 이상 나오는 것이 없다. 인선 과정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져야 할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다. 국회 의원들은 언론에서 실어주니 고만고만한 흠집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의원들의 헛발질로 정치판은 코미디판이 되고 언론은 클릭수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그대로 전달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꼴이다.

말을 그대로 보도한다고 해서 언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말을 전달하지 말고 진실을 찾으려는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보도해야 한다. 빌 코비치와 톰 로젠스틸은 자신들의 저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기자는 진실확인자(authenticator)이며 의미부여자(sense maker)여야 한다고 말했다.¹²⁾

11) 이재경 (2021).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의 문제’ 〈버릴 관행, 지킬 원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pp.79~84.

12) 이재경 (2021). 위와 같은 책, pp.84.



취재 인력

낮은 신뢰도의 원인으로 절대적인 취재 인력부족을 꼽을 수 있다. 종합지나 공중파 방송의 편집국, 보도국 인원 규모도 200~300명 수준이다. 연합뉴스와 KBS는 지역취재 인력까지 합하면 500명 정도다. 그런데 이들 인원이 모두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빨간 펜’을 든 간부이거나 편집 교열 등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와 KBS를 제외하면 취재인력은 100명이 채 안 된다. 영국 BBC는 취재 편집 인력이 7,000여명, 뉴욕 타임스는 1,300명, 일본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취재 인력이 2,000명에 달한다.

외근 기자들은 매일 몇 건씩 기사를 써야 하지만 외국은 일주일에 한 건을 못 쓸까 봐 고민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인력이 풍부해야 호흡이 긴 기사를 쓸 수 있다. 기자들이 취재원 앞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은 참담하다. 인력 부족은 게이트키퍼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

고급지의 등장을 기다리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뉴스의 전달수단이 변화했고, 미디어 생태계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종이의 등장에 따라 종이 신문이 나왔으며, 인쇄기 등장에 따라 신문이 대중화됐다. 송수신 수단이 개발되면서 라디오가 등장했으며 TV의 등장에 따라 화상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의 등장은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불러왔다. 인터넷을 거쳐 200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폰은 인간의 소통, 나아가 생활을 뿌리째 바꿔버렸다.

신뢰도 문제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에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시대를 관통해서 흐르는 원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이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론은 기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에 수용자인 독자, 시청자가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언론학계가 있다. 이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언론학자들이 2018년 ‘좋은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위한 연구회’를 만들어 방안을 모색해왔다. 연구회는 한국 신문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 PEJ¹³⁾ 지수를 포함해 22개 항목을 만들어 수치화했다.

그 결과 국내신문의 성적표는 비교 대상인 뉴욕 타임스, BBC 등 외국的高급지나 방송들에 비해 가장 낮았다고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밝혔다.¹⁴⁾ 한마디로 흥미성 대중지만 있을 뿐 고급지는 없으며 방송뉴스도 수준 미달이다. 언론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단체 또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 취재준칙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를 망각했다.

신뢰 회복엔 시간이 걸린다. 몸에 밴 관행을 깨려면 언론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언론인들이 계속 ‘기레기’라는 말을 들을 수 없지 않은가. 🙏

13)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미 메릴랜드 대학 저널리즘 스쿨이 산출하는 지수. PEJ는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Th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약자다.

14) 배정근 (2018). ‘한국신문 기사의 현실과 미래’ <기사의 품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p.165~173.

02

취재관행과 보도행태 점검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방안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노베이션팀장



들어가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구독 요금제를 안내할 때, ‘뉴스’ 항목을 이렇게 명한다¹⁾: “기자 1,700명이 하는 고유의 보도로 세계를 이해하세요”

‘고유의 보도(original reporting)’는 해외 우수 언론사에서 흔히 강조되는 문구다. 직접 취재한 고유의 결과물이야말로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의 규율(discipline of verification)’에 있으며, 그것이 저널리즘을 소설이나 예술과 같은 다른 분야와 구분 짓는다.²⁾

국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 중에 얼마나 많은 보도가 직접적인 확인과 검증이라는 규율이 결여됐는지 규명할 수 있다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22년 4월,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연구진은 네이버 모바일에서 구독자 300만 명 이상인 14개사를 분석했는데 기사 출처가 타 언론과 커뮤니티인 경우가 38.1%를 차지했고, 그중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경우는 분석 대상 중 6.2%에 불과했다고 한다.³⁾ 취재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사도 이렇할진대, 군소 언론은 어떨까. 당장 포털을 훑어 보기만 해도 감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사의 출처가 타 언론이나 커뮤니티가 아니면 고유의 보도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직접 멘트를 듣거나 자료를 확보해 적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취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저널리즘에서의 ‘검증’은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의 원 출처를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다각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쓴 기사나 글을 단순히 베껴 쓰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일 뿐이다. 제대로 된 취재라는 본질이 결여된 데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쌓이고 있다.

출처가 부실한 기사

독자들은 뉴스를 소비할 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포스트 같은 콘텐츠와는 다른 기대를 갖는다. 더 정확하고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1) The New York Times. Choose a plan that's write for you. 2022. 8. 2. 접속. URL: <https://www.nytimes.com/subscription/view-plans>

2) Kovach, B.,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3) 김고은 (2022). 네이버 메인뉴스 10건 중 4건은 ‘취재 않고’ 쓴 기사. <기자협회보>. URL: <https://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424>

것이라는 기대다. 그것은 기사가 그저 뉴스 플랫폼에서 생산됐다는 것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내용물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장치’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기사는 정보가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그것을 기자가 직접 치열하게 조사하며 검증해 도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뉴스에서 출처는 취재원을 통해 규명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사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빠져댄다. 기사를 통해 취재원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사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문장의 ‘주어’가 없는 기사다. ‘무엇에 따르면’, ‘누가’ 어찌했다는 출처는 없고, 무어라고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술어만 있다. 알리고 전했다는 주체가 불분명해 정보가 어째서 믿을 만한지 가늠해보려고 해도 판단의 근거가 없다. 기사는 결코 검증될 수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을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영미권에서는 매우 드물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주요 일간지 10개와 해외 언론사의 1면 기사를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국내 일간지에서 기사당 1.19개였지만,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타임스>는 모두 0건이었다.⁴⁾ 이것은 국내 언론사들이 해외 우수 언론에 비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많이 쓴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기사라는 것은 무주체 피동형 문장 없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보의 출처가 있다면 주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어는 있는데, 그것이 ‘익명’인 경우다. 사건사고든 정책 현안 이든 산업계 트렌드든, 국내 기사에서는 익명의 ‘관계자’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인터뷰 자체를 다루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기사들이 익명의 관계자로 채워지고 있다. 관계자의 종류도 무수히 다양하다. ‘청와대 관계자’, ‘경찰 관계자’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관계자’, ‘재계 관계자’와 같이 도무지 범위와 실체를 알 수 없는 관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한다.

‘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전적으로는 그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4) 이나연 (2018). 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고품질 기사’ NYT는 100건 중 55건, 한국은 7건. <신문과방송>,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수 있으므로, 무주체 피동형 문장만큼이나 실체가 불분명하다. 범위가 불분명해 아무나 될 수 있고, 구체성이 없어 누구도 특정될 수 없다. 취재원 입장에서는 익명의 그늘 하에 숨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보를 흘릴 수 있고, 설령 정보가 부정확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기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멘트를 고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쉽게 취재보도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결정권, 정보의 근접성 등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정책에 대해서라면 말단 공무원과 국·실장의 발언이 같은 무게를 지닐 수 없고, 기업 정보에 대해서라면 신입사원과 경영진의 발언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 게다가 출처는 때때로 취재원의 '동기'를 드러내고,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사를 비판하는 '재계 관계자'가 경쟁사인 B사의 직원 이라면 어떻게 읽히는가? 독자는 기사 내용을 또 다른 맥락을 갖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기사에서 익명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실명으로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자와 같이 민감한 상황에 처한 경우다. 하지만 영미권 언론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익명으로 뭉뚱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정 익명으로 표기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맥락을 설명하면서 취재원이 해당 사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더해 당사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취재원을 확보하고, 복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보도한다. 익명이지만 그것이 신뢰할 만하도록 부가적인 장치를 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출처가 있지만, '한 명'에 불과한 경우다.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한 명의 발언만으로 온전하게 규명되긴 쉽지 않다. 누군가가 무어라 말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이 입증된다. 이런 까닭에 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검증의 규율'은 단순히 '사실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진실(truths about the fact)'을 찾는 것을 뜻한다.⁵⁾

5) American Press Institute. What makes journalism different than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2022, 8. 2. 접속. URL: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journalism-essentials/what-is-journalism/makes-journalism-different-forms-communication/>



때로는 같은 사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러 취재원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스트들이 추구하는 공정성이자 균형감이다. 그러지 않으면 기자는 객관적인 제삼자가 아닌, 누군가의 대변자가 된 듯한 기사를 생산하게 된다.

출처가 부실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취재도 부실하게 한다. 명확한 정보와 책임이 불분명한 취재원도 익명의 그늘 하에 용인하고, 세 명이 아닌 한 명의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쓰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취재는 편하고 쉽다. 취재원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개하도록 설득할 필요도 없고, 여럿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다. 그렇게 편한 취재에 길들여진 기자가 늘어날수록 신뢰할 수 없는 기사가 많이 생산된다.

부실 기사의 근원

출처가 부실한 기사는 왜 양산되는가? 누군가는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취재가 업의 근간이자 핵심적인 우선순위에야 할 기자가 취재할 시간이 없어서 부실한 결과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건축가가 설계할 시간이 없어서 부실한 설계도를 내놓고, 수술 집도의가 수술할 시간이 없어서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 납득하겠는가? 모든 직업인은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보를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시간이 일정부분 소요된다. 추가적인 취재원을 찾고, 취재원을 설득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은 ‘추가적인 취재원을 찾고, 출처 표기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업무에서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인지하더라도 기획기사와 같이 특수한 여건에 처하면 실천할 ‘옵션’ 정도로 생각한다. 주어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를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이유다.

출처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담았다면 본질적으로는 뉴스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출처가 없는 뉴스는 발간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출처가 명확해야 기사로서의 전제가 성립한다. 그런 와중에 부실한 출처가 양산되는 이유가 있다.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무주체 피동형’이나 ‘관계지’를 내세운 문장, 한 명의 말만 듣고 쓴 기사는 무수히 접하거나 용납된다.

해외에서 출처와 맥락이 두드러지고 다각적으로 검증된 기사가 발간되는 것은 기자들이 특별히 윤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취재원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업무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적용한다. 기자들은 익명 보도를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에디터의 평가와 승인을 통해 그것을 발간할 수 있다. 대체로 내부 고발자, 범죄 피해자,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주장이 아닌 사실을 다루는 기사의 경우에만 검증을 전제해 익명이 용인된다. 이때 에디터의 게이트키퍼가 두드러진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⁶⁾

“에디터들은 기자와 함께 익명 사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취재원들은 에디터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자는 해당 정보가 발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발간되는 모든 것에 대한 출처는 최소한

6) The Washington Post, Policies and Standards, 2022, 7, 30, 접속,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cies-and-standards/>

한 명의 에디터에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는 기사에서 언급되는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로 독립적인 두 명의 취재원을 선호한다.”

물론 국내 언론계에도 이와 유사한 윤리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발간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에디터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갖고 적용해야 빛을 발한다. 미국에서 ‘에디터나 정책 핑계를 대는 것’은 취재원을 설득하는 주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데스크들은 가이드라인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명기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사를 용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스스로도 기자로서 기존 관행대로 기사를 발간해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저울

이쯤 되면 ‘원인의 원인’이 궁금해진다. 독자의 신뢰를 조성하는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단순히 기자들과 에디터들이 바빠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챙긴다. 불편한 진실은 많은 뉴스룸에 기사의 퀄리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룸의 기자와 에디터들은 무엇을 신경 쓰는가? 기사의 성과에 있어서 무엇을 높이려고 노력하는지 더듬어보면 떠오르는 것은 ‘데이터’다. 얼마큼의 독자들이 기사를 조회했는지에 대한 페이지뷰(PV)를 적지 않게 고려한다. PV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기자조차 PV가 높게 나오면 뿌듯해한다.

어떤 기사의 PV가 높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저널리즘의 질과는 무관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기자협회보가 2021년 네이버 콘텐츠 제휴 입점사의 모바일 편집판 내 ‘랭킹’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PV 상위권 50위 내 기사 대다수는 연예인·셀럽 관련 사건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발 논란, 선정적이거나 성적인 코드가 담긴 뉴스인 것으로 분석됐다.⁷⁾

인간은 이성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퀄리티 저널리즘을 원한다고 말해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클릭해서 읽게 되는 게 사람 심

7) 최승영 (2022).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 <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067>

리다.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의 '의식적인' 이성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더 많이 반영한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면밀해져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PV가 아닌 체류시간이나 스크롤 깊이와 같은 '질적인 지표'가 언론계에서 중시되고 있지만, '질적인 지표'가 '기사의 질'을 오롯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 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쓴 기사나 가십거리, 선정적인 기사도 길게 스크롤되고 오랜 체류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소비된다. '구독 수'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이버에서 기자 구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속보'다. 속보를 많이 쓰는 기사는 구독자 수도 많은 경우가 많다. 속보라고 해서 기사의 품질이 낮다고 할 순 없지만, 효율과 품질이 양립하기 어려움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생태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것이 조성하는 뉴스룸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취재하지 않거나 알파하게 취재해서 쓴 기사도 데이터상으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기자들은 숫자의 달콤함에 길들여진다. 높은 PV를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좋은 기사를 썼거나, 최소한 기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정이 고되고 어렵더라도 더 촘촘하게 취재할 유인은 높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숫자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좌우되면 본질이 흐려지기 쉽다. 데이터 자체가 품질을 입증할 순 없기 때문이다. 숫자로 품질을 환산하려고 하는 순간 수많은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느 독자가 얼마나 어떻게 기사를 소비했는지는 알아야 하지만, 데이터는 리터러시를 갖고 해석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이라는 업의 본질과 그 근간이 되는 경쟁력이다. 정량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성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기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에 대한 '정성적인 기준'은 어떠한가? 기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취재가 부실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자나 데스크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기사가 발간할 만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썼을 것이고, 데스크도 마찬가지로 판단으로 기사를 승인했을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높은 기준을 갖고 제동을 걸었다면 신뢰받지 못할 부실한 기사는 발간될 수 없다.

기사에 대한 기준이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수준의 엄격함을 갖고 치열하게 탐구해 발간한 기사를 일상적으로 생산해본 적도 없고, 요구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명품만 봐온 사람은 가품을 봤을 때 부실함과 엉성함을 곧장 감지한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기사만 봐왔거나 발간해왔다면 부실한 기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거부감이 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사는 어떻게 평가받고 가늠돼야 하는가?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는 단독 기사나 인상 깊은 기획 시리즈가 박수를 받았다. 신문사의 경우 1면에 게재된 기사가 상징성 있게 인식되기도 했다. 편집회의를 거쳐 1면으로 채택된 것 자체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아 게이트키퍼를 통과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특종을 발굴하고’, ‘뜻깊은 기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1면에 실렸다는 것만으로 품질의 디테일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수많은 특종과 훌륭한 기획 기사를 배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더 많은 정보와 맥락 제공하기

기사는 단순히 아젠다의 형성이나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어째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왜 가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업을 지탱하는 근간인 저널리즘은 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불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을 만하더라도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

이다.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을 검증해 기사가 믿을만 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독자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실명의, 다각적인 취재원을 통해 확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취재 보도의 전체 사이클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독자들은 때때로 기자들이 왜 특정 사건을 취재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슨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 취재 소재를 취사선택하는지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안〉에서는 왜 특정 범죄나 용의자에 대해 보도하기를 선택하는지 에디터가 이렇게 설명했다.⁸⁾

“이 결정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범죄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유망한 사람을 동반했거나, 지속적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진실을 단번에 규명해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독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 중 하나이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자가 정보를 잘못 취득할 수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취재원도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속성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NPR〉은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 수사에 대한 기사 말미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⁹⁾

“이것은 진행 중인 기사입니다. 보도된 어떤 사실들은 추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관계당국 보고와 믿을 만한 언론과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집중할 것이며, 상황이 발전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기사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취재한 결과물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오픈 주방’을 통해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8) Hefty, J. (2018). How the Coloradoan reports on crime. 〈Coloradoan〉. URL: <https://www.coloradoan.com/story/news/2018/02/08/how-coloradoan-reports-crime/317804002/>

9) Garsd, J. et al. (2022). NYPD identifies a person of interest in the Brooklyn subway shooting. 〈NPR〉. URL: <https://www.npr.org/2022/04/12/1092286633/brooklyn-nyc-subway-station-shooting>

것이다. 미국 <LAist>는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¹⁰⁾

“카일 스트로크스(Kyle Strokes) 기자는 부켓 캐년 로드(Bouquet Canyon Road)의 리유니언 지점에서 취재한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비주얼 저널리스트 차바 산체스(Chava Sanchez)는 리유니언 센터와 목요일 밤 철야행사에서 찍은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엘리 유(Elly Yu)는 용의자의 집에서 취재했으며 가족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가로바(Robert Garrova)는 헨리 마요(Henry Mayo) 병원에 있었습니다. 프랭크 스톨츠(Frank Stoltze)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알리사 정 페리(Alyssa Jeong Perry)는 산타 클라리타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제이콥 마르폴리스(Jacob Margolis)는 센트럴파크의 철야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디지털 프로듀서인 라이언 폰세카(Ryan Fonseca), 엘리나 샷킨(Elina Shatkin), 마이크 로(Mike Roe), 브라이언 프랭크(Brian Frank)는 이 기사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 조사와 보도는 KPCC 뉴스캐스터 프로듀서들이 했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고 수정해야 했는지 표명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인다. 그것이 언론사의 과오나 실책이더라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한다. <USA투데이>는 한 기자가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기사 23개를 삭제한 적이 있는데, 기자의 실명과 삭제 맥락, 삭제된 기사 리스트를 모두 공개했다.¹¹⁾ 삭제된 기사를 클릭하면 “이 기사는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삭제됐다”는 에디터의 메모와 함께, 배경을 설명한 기사 링크가 뜬다.

언론사를 둘러싼 설명은 다각적일수록 좋다. 누가 어떻게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언론사들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보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의

10) LAist Staff (2019). Saugus High School Shooting in Santa Clarita: Teen Girl And Boy Dead, Alleged Shooter In 'Grave Condition.' <LAist>.

11) USA Today (2022). USA TODAY removed 23 stories from website, other platforms following audit of reporter's work. <USA Today>. UR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22/06/16/usa-today-audit-reporter/7647731001/>

‘그레이TV’가 소유한 방송사 <KCRG>의 뉴스 디렉터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¹²⁾

“그레이TV에 있는 누구도 KCRG-TV9가 무엇을 취재하거나 취재하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는 방송사의 재정을 감독하는 부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 개발, 유지하는 것을 돕는 기술·디지털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다룰지 가이드하는 기업 뉴스 또는 편집 부서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만 보도하도록 하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정말로 사실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널리즘이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저널리스트는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취재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예술처럼 정형화할 수 없고 무한히 열려 있다. ‘선진적인 문화 형성’은 ‘범죄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언론계에서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공표해왔지만, 취재보도의 관행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원칙이란 때때로 효율이나 편이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실천하긴 쉽지 않다. 게다가 준칙이나 강령은 백화점처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지금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 일상 업무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어떤가? <뉴욕타임스>는 일부 기사의 말미에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이 있으면 링크를 방문하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¹³⁾ 링크에서는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정책과 과정을 설

12) Carros, A. (2018). KCRG-TV9: how we operate. <KCRG>. URL: <https://www.kcrg.com/content/news/KCRG-TV9-how-we-operate-478668423.html>

13) Ivory D. et al (2022). What hundreds of photos of weapons reveal about Russia's brutal war strategy.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22/06/19/world/europe/what-hundreds-of-photos-of-weapons-reveal-about-russias-brutal-war-strategy.html>



명한다.¹⁴⁾ 이를테면 ‘기자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연루되는 것을 어떻게 피하나’, ‘기사 정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 ‘충기 난사는 어떻게 다루나’, ‘익명의 취재원은 왜 사용하나’, ‘〈뉴욕타임스〉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 등과 같은 항목이다.

더 많은 취재든, 더 투명한 보도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원이 소요된다. 즉 신뢰받는 퀄리티 저널리즘은 ‘비싸다’. 자원이 한정돼 있는 뉴스룸을 통째로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작은 곳에서라도 확실하게 적용하고, 확장해나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동아일보는 탁월한 콘텐츠를 뜻하는 ‘히어로콘텐츠’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는 실명의 취재원을 추구하고, 불가피하게 익명을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정보와 맥락을 설명한다. 고유의 취재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사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디 오리지널’이라는 멀티미디어 플랫폼도 운영한다.¹⁵⁾ 해당 플랫폼에서는 ‘인사이드’라

14) The New York Times (2022). Behind the Journalism: How The Times Works.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explain/2022/new-york-times-journalism?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15) The Original. 동아일보. 2022년 8. 6. 방문. URL: <https://original.donga.com/>

는 코너를 통해 그곳에 담긴 기사의 취재보도 과정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원칙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영감’과 ‘자극’을 주는 사례가 언론계 내에 더 많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널리 확산되고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양화를 충분히 축적해 주류가 되게 하면 악화는 악화임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조금씩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

03

슬기로운 시정권고 활용법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시정권고 제도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1. 시작하며: 시정권고를 다시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하겠다)에는 상시 업무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법정업무가 있다. 바로 '조정중재'와 '시정권고'다. 둘 다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들이니 그 역사가 41년이 넘었다.¹⁾ 똑같은 시간을 견뎠지만 두 제도가 갖는 무게감은 사뭇 다르다. 조정중재를 흥행이 보증되는 톱스타 배우에 비유한다면, 시정권고는 그저 무명의 조연급 배우에 가깝다.

우선, 효력 면에서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다시 말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준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언론사가 확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문자 그대로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권고적 효력이란,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²⁾ 언론사가 권고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가해서도 안 된다.³⁾

사회적 주목도 면에서도 조정중재는 시정권고에 비할 바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이용해, 최근 3년 동안 관련 사항을 주제로 다룬 기사량을 비교해보았다.⁴⁾ 조정중재를 다룬 기사건수는 666건인데 반해, 시정권고 기사건수는 17건에 불과했다. 시정권고 제도는 연구자들에게도 관심 밖의 사항이다. 조정중재 제도를 연구한 학술논문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시정권고를 주제로 다룬 학술논문은 정말 희귀하다.⁵⁾ 작년 한 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1) 시정권고에 관한 언론기본법 규정은 제50조 제1항 및 제8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③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시정권고의 대상 범위, 관련 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질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198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초의 시정권고 사례가 나왔고, 1987년까지는 연건처리실적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건수가 적었다(1983년 3건, 1986년 3건, 1987년 6건). 1987년 말에 이르러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야 시정권고를 담당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제도의 체계가 잡혔다(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32-233쪽).

2) 언론중재위원회 (2022), <시정권고 편람>, 7쪽.

3)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마890.

4) 기간은 2019.7.1~2022.6.30.로, 언론사는 중앙일간지로 검색조건을 동일하게 부여했다. 검색어 조건은 '조정중재 AND(언론중재위원회OR언론중재위OR언중위)'로, '시정권고AND(언론중재위원회OR언론중재위OR언중위)NOT인권 위'로 했다.

5)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 검색서비스(www.kci.go.kr)를 이용해 관련 논문을 검색해보니, 조정중재 관련 논문은 30여건인데 비해 시정권고 관련 논문은 3건에 불과했다. 단, 이러한 검색결과가 엄밀하게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하겠다) 개정 이슈는 어떤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방식 등으로 역시 거의 대부분 조정중재 관련 사항이었다. 종합해보자면, 시정권고는 언제나 이 인자였던 것이다.

한편, 시정권고에는 붙은 것에 붙이는 딱지를 떼어 낸 흔적이 여전히 역력하다.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분쟁을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조정중재의 경우, 제도 그 자체의 가치 내지 필요성은 단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라든가, 조정절차 관련 일부 규정의 위헌성이 다투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시정권고의 새로운 근거 법률인 언론중재법 제정 직후, 몇몇 언론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시정권고 제도의 위헌성이었다.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그것(시정권고)은 여론시장의 주역으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국민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후견체제를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며, 공익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을 이끄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정에 간섭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⁶⁾ 학자 중에서도 시정권고의 사유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시정권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언론사의 사회적 인격상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 특히,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원회가 스스로 한 당사자가 되어 시정권고라는 행정행위까지 수행하는 것은 중립성을 요구하는 사법기관 구성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한다.⁸⁾ 물론, 시정권고에 붙여진 이러한 노란딱지들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제32조 제4항), 언론사로서는 권고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권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정권고조항 자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6) <https://blog.naver.com/prkys500/150003185606>(검색일: 2022. 9. 7)

7) 문재완 (2005).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언론과법>, 제4권 제1호, 108-110쪽.

8) 앞의 논문, 109-110쪽.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떨어지긴 했다.⁹⁾

언제나 이인자였으며 박복한 운명이었던 시정권고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41년의 시간을 견뎌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손영준 교수는 “중재위의 시정권고 기능을 대체할 기구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인쇄매체나 인터넷매체의 권익침해적 보도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 또 중재위의 시정권고가 언론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 시정권고가 존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⁰⁾ 구체적으로 시정권고 제도가 갖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시대적 요청을 해소함에 있어서 시정권고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장을 바꾸어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정권고 제도의 사회적 가치

시정권고와 여러 면에서 대조되는 조정중재 제도의 핵심적 존립 근거 내지 사회적 가치는 언론보도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다. 피해구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 실현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헌법 제 21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¹¹⁾ 그런데 시정권고는 피해구제와 분명 거리가 있는 제도다. 시정권고를 언론에서 수용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시정권고의 제도적 존립 기반 내지 사회적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 침해예방 효과

시정권고 연구자들은 이 제도에 법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손영준 교수는 “이미 보도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개인적, 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보도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효력이 있는 것

9)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13(병합).

10) 손영준 (2019).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2호, 92쪽.

11) 헌법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로 보인다”고 하여 시정권고의 법익 침해예방 효과에 주목했다.¹²⁾ 시정권고로 인해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언론보도의 본질적 부분, 즉 권력에 대한 감시나 의제설정, 프레이밍 등에 관한 것이 아니며,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강제적 제재가 없고, 또 위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 외부 공표 조항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축효과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조소영 교수는 “시정권고 대상이 된 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익침해가 분명한 보도에 한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운영한다면 제도의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¹⁴⁾ 김창숙 교수 역시 “(위원회) 교육과 시정권고 등을 통해 언론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처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다”고 전제한 후 “시정권고제도 역시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¹⁵⁾

시정권고의 침해예방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정권고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시정권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정권고 추이 분석, 시정권고결정문 내용 분석, 언론인 및 언론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는데 해당 보고서가 2012년 10월에 발간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권고에 침해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총 3가지다.¹⁶⁾

첫째, 특정 법익침해 유형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익침해 빈도가 감소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의 경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빈번했고 관련 시정권고 건수 또한 많았다. 하지만 두 침해 유형 모두 1990년대 후반

12) 손영준 (2019). 앞의 논문, 90쪽.

13) 위의 논문,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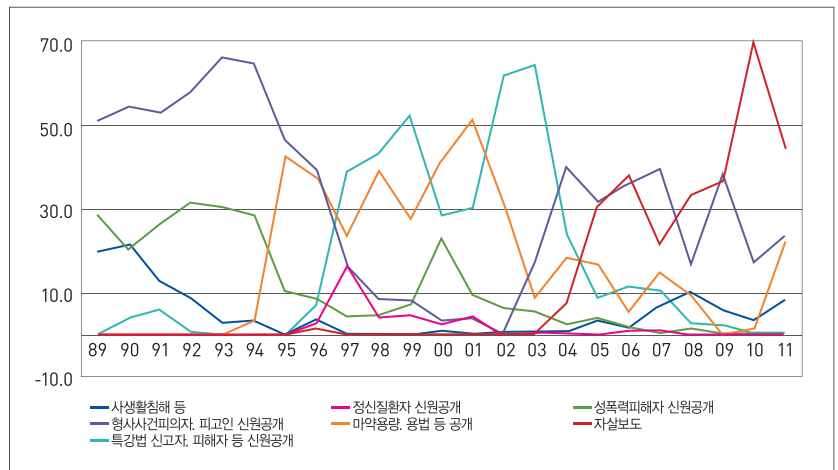
14) 조소영 (202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54-55쪽.

15) 김창숙 (2021). 언론중재위원회 40년 성과와 제언. <언론중재>, 2021년 봄호, 36-37쪽.

16) 이하에 나오는 해당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후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용량·용법 등 공개’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보고서는 “사회현상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특정 침해 유형의 감소가 시정권고라는 단일 요인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언론풍토를 개선하는데 시정권고가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림 1〉 침해유형별 구성비 (1989년 ~ 2011년)



둘째,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매체들이 동일한 시정권고를 반복해서 받는 횟수가 높지 않았다. 분석대상기간(2005년~2011년) 동안, 시정권고를 받았던 391개의 매체 중에서 53.5%에 해당하는 209개의 매체들은 동일한 시정권고를 반복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정권고를 한 번 받으면 동일한 유형의 법익침해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일한 시정권고를 반복해서 받은 적이 있는 나머지 매체 중 80.2%(146개)의 경우, 그 반복 횟수는 연평균 1회 이하에 그쳤다.

〈표 1〉 동일한 시정권고 빈도 (2005년 ~ 2011년)

반복 횟수 (연평균)	0회	1회 이하	1회 초과	합계
매체수 (%)	209 (53.5)	146 (37.3)	36 (9.2)	391 (100.0)

셋째, 현직 언론인들이 직접 시정권고 내용을 향후 보도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한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중앙일간지 사회부 차장 및 지역일간지 편집국장 등을 비롯한 현직 언론인 15명과의 심층인터뷰 결과가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시정권고결정문은 편집국장 이하 담당 데스크,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되고 있었고 권고된 사항을 향후 보도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사 작성 및 편집, 데스크링 과정에서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p>시정권고결정문 처리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에게 보내온 시정권고결정문은 편집국장에게 전달되며 편집국장은 해당 내용을 담당 데스크에게 알려주며 시정권고를 수용합니다. 시정권고결정문 내용을 전달받은 해당 데스크는 취재기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편집국 간부회의 때 시정권고결정문을 회람하며 데스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담당 데스크는 그 내용을 곧바로 취재기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결정문이 전달되면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해 데스크들이 토론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별 이견 없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지역일간지 3) • 시정권고결정문이 총무국에 접수되자마자 편집국에 전달되어 편집국장이 해당 데스크 및 담당기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부된 문서를 사분화하여 담당기자에게 전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향후 유사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조치까지 취하곤 합니다. 여타 부서나 다른 기자들도 당연히 알아야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늘 게시하고 그때는 물론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빈도수가 줄어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기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끔 재발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시정권고결정문을 일정기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주간지)
<p>시정권고 내용의 타당성 평가 및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언론윤리 측면에서 조금 잘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반성할 수도 있구요.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정내용을 보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자 신원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수법 상세묘사'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정이 들어오면 우리 기사가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데스크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2) • 시정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재위의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거니까 참고가 되죠. 당연히 어느 언론사든 가끔적이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명예훼손성 기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지 못한 주의사항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출석요구서보다 시정권고결정문을 받는 게 마음이 놓이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참고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서와 기자들에게만 전달하는데, 편집국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체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통신 2)

시정권고제도가
자사 및 전체
언론 풍토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시정권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또 취재기자 뿐 아니라 편집기자나 교열기자들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일간지 2)
- 언론 풍토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과 지면보도에 보다 세밀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모든 기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일간지 7)

나. 보편적 법익침해 현황 지표

언론보도에 의한 전반적인 법익침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과 위원회 조정중재 사례, 그리고 시정권고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판결과 조정중재는 이른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건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기사가 소송·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해당 기사에 법익침해적 요소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판결이나 조정중재 사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언론보도 관련 법익침해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일정한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당사자가 사건화하지 않은 법익침해적 언론보도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사자 요인에 의해 생기는 오차가 시정권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시정권고는 안건 상정에서부터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위원회 직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⁷⁾ 대신, 이러한 시정권고에는 모니터링 등 안건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오차가 존재한다.¹⁸⁾

한편, 판결이나 조정중재로 사건화되는 대상은 모두 당사자가 있는 기사들이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했거나 기사에 언급된 신상정보를 종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특정

17)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 아닌 자도 제한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고 하여 피해자는 물론, 제3자까지도 할 수 있는 신청심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09년 2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시정권고는 전적으로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8) 시정권고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회의에 매달 상정되는 인건들은 총 10인의 심의원들이 총 2,682개(2022. 7. 1. 기준)의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

한 상대방을 의미한다. 물론, 보도청구 사건에서는 요구되는 당사자 특정성이 더욱 약화되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보도가 그 사람이나 단체, 집단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설령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없는 기사라도 법익은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흔히 ‘가짜뉴스’라 부르는 허위조작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혐오표현’ 내지 ‘차별적 표현’도 해당될 것이다. 만일 어떤 언론보도가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혐오표현을 사용한다면 사회적으로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겠으나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조정중재에 의해 사건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없는 기사에 관해서도 시정권고만큼은 기사의 법익침해적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다.¹⁹⁾

결국, 판결이나 조정중재에 비해 시정권고가 보편적 법익침해 현황 지표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의 피해 당사자가 사건화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오차가 없으며, 당사자는 없지만 다양한 사회적 법익 내지 가치를 침해한 언론보도 현황까지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시정권고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 사례로 계간 <언론중재> 2018년 여름호(통권 제147호)에 실린 ‘시정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본 미투보도 실태’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당시 우리 언론의 ‘미투보도’ 현황 내지 문제점을 총 149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토대로 분석, 4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²¹⁾

3. 최근 시정권고 현황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향성

가. 최근 시정권고 현황 및 특징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전과 달라진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꼽을 수 있다.

19)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23건의 기사가 ‘차별금지’ 위반으로 시정권고결정을 받았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에서는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제1항)’거나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0) 물론, 시정권고를 위한 안전 발굴 및 상정 과정에서 주요 법익침해적 언론보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심의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시정권고 제도가 전적으로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의적 심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한 경우 ②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경우 ③ 기사 제목의 과도한 선정성 ④ 가해자와 피해자 간 통신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

첫째,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 해 동안 내려지는 시정권고결정 중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5.3%로 가히 압도적인 상황이다.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랜 기간 부동의 1위였던 일간지의 경우, 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법상 언론매체의 하나로 편입된 지 4년만인 2009년 추월을 허용하고 말았다.²²⁾ 그 이후로도 인터넷신문 관련 시정권고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신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비롯된, 다소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매체수가 많으니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진 결과일 것이다.²³⁾ 이와 동시에,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된 취재 및 편집 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학습 기회 및 법률 지식의 부재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본다.²⁴⁾

〈표 2〉 최근 6년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6.11. ~ 2021.12.31.)

총계	매체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6,735 (100%)	187 (2.7%)	313 (4.6%)	31 (0.5%)	9 (0.1%)	381 (5.6%)	5,744 (85.3%)	70 (1.0%)

둘째, 인격권 침해, 기사형광고, 자살보도, 범죄자 신원공개 등의 법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 신원공개는 과거부터 문제되어온 유형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2011년까지는 범죄자 신원공개가 전체 시정권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²⁵⁾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범죄자 신원공개 금지, 다시 말해 ‘익명보도의 원칙’이 언론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 대신, 인격권 침해, 기사형광고, 자살보도 등과 같은 법익침해 유형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인격권 침해의 경우,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유튜브 등 SNS에서 일방적으로 폭로된 개인의 사생활을 여

22)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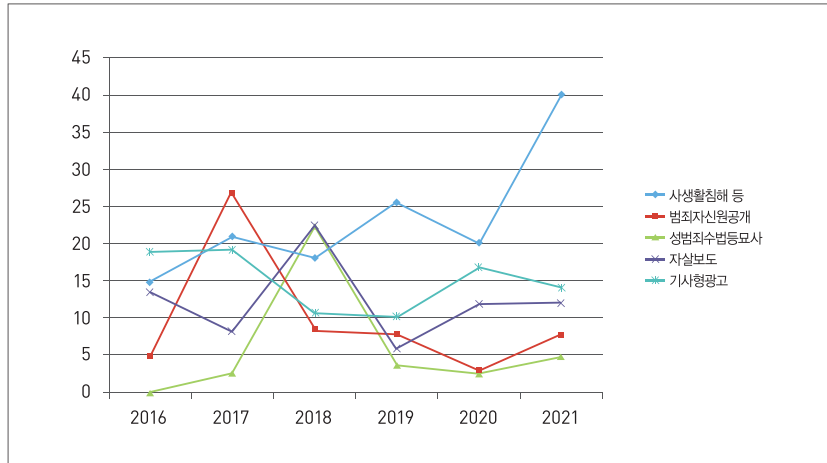
23) 언론중재위원회 (2022). 〈2021 시정권고 사례집〉. 11쪽.

24) 언론중재위원회 (2012). 보고서, 6쪽.

25) 위 보고서, 7쪽.

과 없이 보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비롯해 자살 보도와 그 문제점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도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보도의 대상이 되곤 하는 유명인의 범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²⁶⁾ 이들 법익침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그림 2〉 침해유형별 구성비 (2016년 ~ 2021년)



나. 주요 법익침해 유형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향

(1) 인격권 침해

2021년 9월 17일자 A매체 「BJ○○, ◇◇◇와 이혼 마무리 “법적 슬로, 위자료는 20억”」 제하의 기사에서는 유명 유튜버의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유튜버의 딸인 아동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여과 없이 기사 본문에 그대로 게재했다.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몹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침해유형이다. 이 기사에 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며 “비록 해당 사진이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가 폭행 및 성매매 사실을 언급하며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딸의 초상을 공표한 것

²⁶⁾ 언론중재위원회 (2022), 앞의 사례집, 10쪽.

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의결번호 제2021-1007호).²⁷⁾

2020년 4월 8일자 B매체 「[단독] ☆☆☆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제하의 기사에서는 유명 작가 관련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정황을 보도하면서 작가가 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미지화해 게재했다. 이 기사에 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 통신비밀 침해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며 “동의 없이 개인 간의 통신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의결번호 제2020-245호).²⁸⁾

2017년 2월 12일자 C매체 「“상속재산 순실 이모보다 많았을 것” 제하의 기사에서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한 사람의 파혼이력 및 병력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며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인물일지라도, 그의 파혼 경위와 병력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의결번호 제2017-199호).²⁹⁾

세 가지 사례를 소개했지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는 그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최근 들어 그 건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내려지는 시정권고 결정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된다.

먼저, 공인 내지 공적 인물의 언행은 공적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도 과정에서 명예·초상·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를 수인해야할 범위가 사인에 비해 훨씬 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모든 면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性) 문제라든가, 질병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 개인의 양심 및 신앙의 문제, 거실이나 병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모습 등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공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공인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곤란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을 공적 영역에 노출시

27) 위 사례집, 21쪽.

28) 위 사례집, 29-30쪽.

29) 언론중재위원회 (2018).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96쪽.

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인의 주변 인물은 공인보다는 사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SNS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을 기사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SNS는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영역이다. SNS가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SNS를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킨다는 SNS 고유의 기능 및 특징을 고려한다면 사적 공간에 가깝다. 또 이용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는 SNS가 일종의 매스미디어화하기도 한다. 결국,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공개에 대한 동의를 있는지, 공개에 따라 충족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될 수 있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다.

(2) 기사형광고

2020년 5월 25일자 D매체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제하의 기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게재 지면, 바이라인 등 형식상 온전한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전경사진, 지하철 몇 호선 무슨 역 몇 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병원 위치까지 의료법 및 동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관해 위원회는 기사형광고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며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의결번호 제2020-394호).³⁰⁾

현재 기사형광고 관련해서는 위원회 외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서도 심의하고 있다. 이들 심의와 구별되는 시정권고의 특징은 ‘기사심의’만을 한다는 것이고, 개별 법령에 기사형광고 규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을 때에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시정권고한 기사들은 대체로 의료기관 관련 기사형광고였다. 의료법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


30) 언론중재위원회 (2021). <2020 시정권고 사례집>, 66-67쪽.

법을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기사의 형태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3) 자살보도

2021년 4월 28일자 E매체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 선택」 제하의 기사에서는 20대 남성의 자살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의 동기가 코인 투자 실패인 것처럼 보이도록 기사 제목을 달았다. 이 기사에 관해 위원회는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며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단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의결번호 제2021-582호).³¹⁾

자살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살보도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³²⁾ 자살보도를 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도를 신중하게 하면 막을 수 있는 자살이 있다고 본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자살보도에 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자살 동기를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하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는 경우 

31) 언론중재위원회 (2022). 앞의 사례집, 57쪽.

32) 언론중재위원회 (2017). [인터뷰] 가장 불행한 선택을 바꾸는 따뜻한 한마디. <언론사람>, 2017년 5월호, 5쪽.



미성년 '잊혀질 권리'가 알려주는 정보사회의 속성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예정이다. 정부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2024년까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과 가족 또는 제3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등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4년 유럽연합 '잊혀질 권리' 도입 이후

2014년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삭제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판결의 대상과 영역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2014년 판결에서 대상이 된 정보는 오래된 신문(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서깊은

일간지 <라 방과르디아>에 실린 개인의 사회보험료 연체내역이다. 이 판결은 시간이 지나 부적절해진 개인의 금융정보가 검색엔진에서 계속 노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삭제 요청권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삭제 대상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과거 신문 기사 자체가 아니라, 검색엔진에서 특정한 조건(사람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페이지에 한정됐다.

구글 등 정보기술업체는 당시 판결과 ‘잊혀질 권리’ 제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통신규약인 TCP/IP를 개발한 인터넷 설립자 중 1명이자 구글의 인터넷 에반절리스트인 빈트 서프(Vint Cerf)는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는 달성될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했다.¹⁾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내려받고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정보가 일단 공표되어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버리면 삭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색기업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을 넘어 국내 등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어 법제화하는 추세다. 부적절해진 정보가 인터넷에서 지속 유통되어 피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주로 삭제와 블라인드 요청권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소셜미디어의 자녀 사진 ‘셰어런팅’ 빛과 그늘

미성년자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권 도입 또한 인터넷 상에서 생겨난 새로운 피해 확산이 배경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아기의 천진난만함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parenting)’이 넘친다.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이 2013년 5월 소셜미디어 공간에 노출되는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셰어런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²⁾ 인터넷에 일단 노출된 글과 사진은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들이 올린 이미지가 나쁜 의도로 이용되거나 도용되는 등 나중에 사진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에는 프로필을 아예 자녀 사진으로 삼은 부모도 적지 않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녀의 귀여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 자녀 사진을 갖고 다니며 주변에 보여주는 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소셜미디

1) Matt Warman (2012, 3, 29). Vint Cerf attacks European internet policy. <The Telegraph>. URL: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news/9173449/Vint-Cerf-attacks-European-internet-policy.html>

2) Nione Meakin (2013, 5, 18). The pros and cons of ‘sharenting’. <The Guardian>. URL: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3/may/18/pros-cons-of-sharenting>

어로 자녀 사진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로 바뀌었다. 인터넷의 속성상 웹에 일단 게시되면 빈프 서프의 말대로 누구든지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를 내려받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검색엔진 이용자로서는 인터넷에서는 한번 게시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이 누군가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엔 그 주인을 위협하는 환경이 된다. 더욱이 그 개인이 주체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나 아동인 경우에 피해는 중대하다. 부모가 올린 셰어런팅 사진은 얼굴 주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진이 도용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개인간 거래가 자유로운 인터넷 상거래에서 일부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로 삼아 아이 부모로 상대를 오인하게 만들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 유괴 범죄는 블로그에 공개된 아기 실명과 사진이 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며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아기 이름을 별칭으로 바꾸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내서도 2021년 10월 한 범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를 활용해 9살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³⁾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이면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⁴⁾

일부 국가에서는 셰어런팅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당시 13살 소년 대런 랜들이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부모가 자기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사진을 찍는 등 아기 시절 ‘굴욕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10년 넘게 공유해왔으며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당했다는 게 이유다. 소년은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로부터 아기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언론에 밝혔다.

독일 아동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부모가 동의하고 결정한 일이어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아동 인격권 침해로 간주한다. 프랑스에선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최대 4만 5,000 유로(약 5,900만 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유아 시절 사

3) 현화영 (2021. 10. 27). SNS로 1년간 '중2 언니' 가장해 9세 여아 납치하려던 20대男 송치. <세계일보>. URL: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27505485>

4) 문희철 (2022. 7. 8).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쫓다.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336#home>



진을 올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부모들의 자녀 사진 공유를 중단하자는 캠페인(‘Stop Sharenting’)을 벌였다.

지워지지 않는 미성년 시절의 과거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익명의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이지만, 인터넷이 생겨난 이후 그 위험은 증폭됐다. 위험은 커졌지만 그에 대한 효과있는 대응책은 매우 부족하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엔 정보의 유통도 제한적이었고 통제도 어렵지 않았다. 그 시절엔 전화국이 배포하는 인명 전화번호부에 전화가입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실려 있었고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전체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와 연락처 등이 실려 있었다. 당시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후의 세상은 일단 정보가 공개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와 대책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대조적 사례가 있다.

1979년 4월, 부산의 초등학교 4학년 정효주양이 아침 등굣길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납치범은 부모에게 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괴범을 상대로 “효주양을 돌려보내면 선처하겠다”며 긴급 담화까지 발표했을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었다. 유괴범을 대상으로 대통령 긴급 담화까지 발표된 배경은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두 번이나 인질범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효주양은 1년 전 1차 유괴범에게 납치되었다가 부모 품으로 생환한 지 178일 만에 2차 유괴범에 의해 또다시 납치됐다. 2차 납치범이 정효주양을 다시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1차 구출 뒤, 언론을 통해 신상 정보와 사진이 공개된 탓이었다. 정효주양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산의 부유한 기업가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학교와 사는 곳이 알려졌다. 다행히 효주양은 2차 납치에서 다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구출된 효주양이 돌아온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기엔 이름과 사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을 숨기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이후엔 완전히 달라졌다. 2014년 개봉된 영화 <한공주>는 2004년 밀양의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다. 성폭행 사건 뒤 피해 여학생은 고통과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한공주’로 바꾸고,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전학 간 학교에서 아카펠라 동아리에 들어가고 새 친구도 사귀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친구가 공주의 노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당 동영상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려진다. 한공주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했던 가해자 집단을 다시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한공주>의 공주처럼 자발적으로 나를 공유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

해 나의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나의 흔적을 지우기 어렵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의 ‘디지털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점점 더 연결되고 검색이 편리해진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이와 청소년 시기의 이름을 나중에 바꾼다 한들,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현실이다.

‘정효주양 납치사건’ vs ‘한공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성인과 달리 아동 등 미성년자는 성장이 이뤄지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보호대상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정체성과 인격 등이 형성되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못과 행동에 대해서도 성인처럼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각국의 소년법과 청소년 관련법제에 명문화되어 있다. 판단과 책임의식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기를 거치며 각자가 형성하게 되는 개인으로서 정체성은 고정적이거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장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고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미성년자의 언론 노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프랑스 방송은 미성년자의 철저한 보호가 중요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얼굴과 신원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부모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경우에도 신원이 밝혀져 주변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등 기술적 장치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또한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⁵⁾ 일단 언론에 노출되면 ‘정효주양 납치사건’처럼 누군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관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부 국가에서 법률과 자율규제, 관행을 통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언론 노출을 막아왔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 법제와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에 기능하던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두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하나는 보호자인 부모 자신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보호대상인

5) 최지선 (2014. 5). 프랑스-미성년자 인터뷰 땀 부모 서면동의 필수. 〈신문과 방송〉 No.521.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동과 청소년들에 의해서다. 첫째는 셰어런팅의 부작용에서 드러나듯,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해 자녀를 위협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들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 환경이 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온라인 상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미래에 끼칠 영향과 위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청소년은 보호대상이자 정보주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막기 어려운 주요한 배경은 미성년자들이 과거와 달리 부모와 교사의 통제 아래 있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에 걸맞게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소통하는 세대다. 사이버 공간은 과거 학교나 술집, 공연장과 같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달리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과 소셜미디어는 일상 생활의 마당이자 또래집단과 교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적 공간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지도 아래 성장 과정에 있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간과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이용자라는 점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다. 온라인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미성년자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권리 개념은 초기에 사적 영역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입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광범위한 차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정보 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누군가와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소통과 오락, 정보 교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는 수동적 이용자를 넘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각자 자신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불가분 혼합되고 뒤섞인 현실에서는 18살 선거권 부여처럼, 특정한 기준선을 만들어 허용과 금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정보 주체인 까닭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입법 과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정보사회의 기본적 속성에 기인한다. 디지털과 온라인은 생겨난 지 오래 되지 않은 기술과 사회 현상으로, 주된 특징이 환경과 작동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제와 관행이 어느 정도 정형적이고 변화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날 직면한 디지털 온라인 사회는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세상의 변화 폭과 속도는 확대되고 가속화하고 미래세대는 법률을 만드는 기성세대보다 빠르고 새로운 환경을 이용하고 적응한다.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은 향후 온라인 관련 정책과 법률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제·개정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라는 것을 일깨운다. 📖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현황과 방향성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1. 들어가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방역은 일상화되었고, 일상적 모임이 감소하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며, 수업을 듣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과 방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2분기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울고위험군은 16.9%로 2019년 우울고위험군 3.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정신질환에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가 포함된 중증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 공황장애 같은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꺼려지고, 조기 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는 경과를 밟게 될 수 있다. 다른 정신건강문제인 자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은 OECD국가 1위(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며, 자살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새로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하고, 1인 미디어 및 SNS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자살

의 고위험요인에 정신질환이 있으며, 정신질환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는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정신질환의 조기개입 및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004년 7월 30일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활성화 되지 않았고,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까지 개정이 되면서 자살보도를 통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단, 한국의학박바이오기자협회가 2022년 정신질환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정신질환 언론보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언론이 미치는 영향

(1) 국내 언론보도의 현황

2016~2018년간 정신질환에 대한 주요 5대 신문기사 보도 형태 네트워크 분석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 관련 기사의 상당수가 사건/관리/위험 중심의 부정적 기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

정신질환 중 조현병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는데, 황애리 등(2018)은 정신건강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조현병과 범죄가 연관되어 보도된 기사 총 744건, 조현병과 폭력이 연관되어 보도된 기사는 233건이었다.²⁾ 또한 최근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의 사례가 강조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거부감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정신질환’, ‘조현병’과 관련한 기사들은 부정적인 기사 논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³⁾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1)에서 뉴스 기사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 정신질환 기사는 총 12,735건이었으며, 그중 사건·사고와 관련한 기사는 절반 이상인 61.9%(7,878건)를 차지하였다. 또한,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달에는 기사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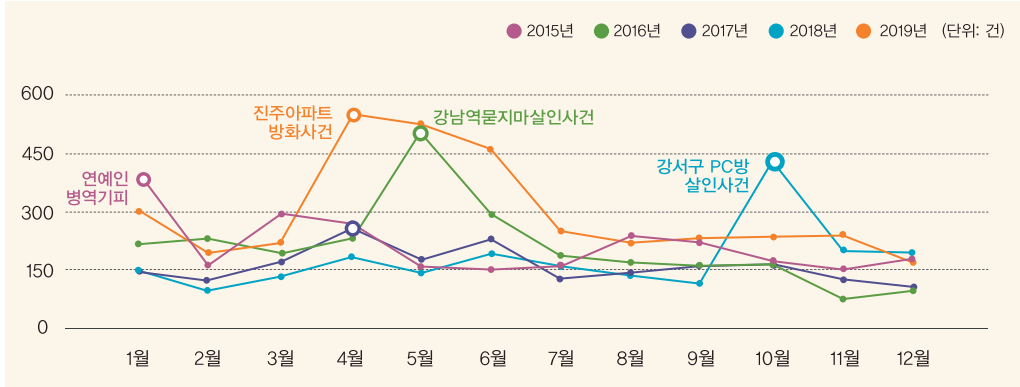
1) 국립건강센터 (2020). 국내 언론에 나타난 정신질환 관련 이슈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2) 황애리·나은영 (2018).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4호.

3) 위와 같은 글.

폭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그림 1〉 언론보도 현황과 사회적 인식(2015~2019)



출처 : 2021년도 서울정신건강 이슈 앤 브리프(SSUE&BRIFE) 1호

(2) 높은 뉴스의존도 및 무비판적 수용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뉴스 이용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모바일 뉴스의존도가 매우 높는데(김선호 등, 2018),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타 매체에 비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일반 대중들은 보도 이슈 관련 경험과 지식이 적을수록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미디어 보도 내용이 자극적일지라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⁶⁾ 그러므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뉴스가 선택되거나 강조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향이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고 차별하게 함으로써 공공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⁷⁾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018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가 주로

4) 서울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21). 2021년도 서울정신건강 이슈 앤 브리프(SSUE&BRIFE) 1호.

5) 황규리·이성규 (2019). 조현병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8호.

6) 위와 같은 글.

7) 심정원·김현정·김운한 (2020). 언론보도에 나타난 정신건강 연관어의 맥락 및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제124호.

TV(68.2%), 인터넷(52.4%), 가족 및 지인(3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⁸⁾ 2021년 서울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4가지 요인 중 '뉴스기사,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89.8%로 가장 높았다.⁹⁾ 또한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극복방안은 '대중매체의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보도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¹⁰⁾

나. 올바른 정보제공의 필요성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 중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질환, 자살, 음주 등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이 조장되지 않도록 '(가칭)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마련·배포가 포함되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관련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언론인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발표하였다.

3. 국내·외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현황

가. 국외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해야 할 표현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해야 할 표현 및 부정적 표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¹⁾ 해외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의 현황은 <표 1>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8)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2018년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9)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 2021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10) 황규리·이성규 (2019). 조현병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8호.

11) 심정원·김현정·김운한 (2020). 언론보도에 나타난 정신건강 연관어의 맥락 및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제24호.

〈표 1〉 해외 언론보도 준칙 주요내용

국가 (주체기관)	구분	권고사항(대안)	피해야할 표현
영국 (time to change)	피해야할 표현 피해야하는 이유 대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서비스사용자, 환자, 고객 항우울제, 투약, 처방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란스러운, 광란의, 광기의, 미친 사이코 또는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우울증 환자 죄수와 수감자 행복 알약
캐나다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넓은 사회적 이슈와 연관성 고려 진단에 세심한 주의 기울이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전문가 견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폭력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조현병 환자 미친, 정신병자, 정신병의 낙인을 찍는 단어 피하기
스코틀랜드 (NUJ scotland)	의무사항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곳에 올바른 진단명 사용 의학용어의 올바른 사용 도움, 지원 및 치료에 집중 헬프라인과 같은 자세한 연락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멸적인 언어 사용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정신질환과 폭력 사이의 연관성 가정 정신질환이 있는 다른이들과의 차별 구어체 사용
호주 (Mindframe)	논쟁 문제 단어 선호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을 진단받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 조현병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받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은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했다 치료법에 대한 정확한 용어 의학적 용어를 잘못 사용한 문장 다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친놈, 미치광이, 정신병자, 정신나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괴로워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정상이 아닌, 미친, 정신이상인, 정신병적 행복알약, 정신병원, 정신과의사(shrinks) 이중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아일랜드 (Head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정보, 권고사항의 상세 정보를 항상 포함 정확하고 합당한 언어 사용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하기 당사자, 전문가 의견 포함 병에서 회복하였거나 긍정적인 사례 보도 이미지와 표지 고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언어 피하기 정신질환과 폭력성 사이의 연관성 피하기 정신분열증과 다중인격장애 사이의 연결 피하기

나. 국내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만드는 언론인 마인드포스트에서 ‘정신장애인언론보도 준칙 1.0’을 개발하였으나, 마인드포스트 내에서만 준수되고 있고 다수의 기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언론준칙과 보도 전 체크리스트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에서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표 2〉).

〈표 2〉 국내 정신질환 언론 보도 모니터링 수행 기관 현황

연번	기관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 (공통)정신질환 모니터링 사업 추진, 결과발표: ·기간: 5개월('21.06~'10.) ·'당사자·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21.12.02.) ·모니터링단: 정신장애인 당사자 12명, 가족 1명 참여 - 2022년도 모니터링 시행 중
2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 시민 정신건강 언론 모니터링 시행
3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언론 모니터링 시행
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언론 모니터링 시행

앞서 언급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효과를 보면, 국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 2013)이 발표된 이후 언론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 관련 행동도 감소추세('11년과 '16년의 평생 유병률 비교시 자살 생각 15.6%→15.4%, 자살 계획 3.7%→3.0% 자살 시도 3.2%→2.4%)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의한 효과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우나, 변화 요인들 중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홍진 등(2021)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유명인의 자살 관련 보도 이후, 한달 동안 일반인 자살율은 평균 18%가 증가했으며, 2012년 자살예방법과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면서 유명인 자살 보도 이후 한달간 자살률 증가 폭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발표하였다.¹²⁾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관련 보도 권고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다.¹³⁾

4.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개발(서울시 정신건강사업지원단&한국의학 바이오기자협회)

가. 개발 및 발표

정신질환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확산력이 강한 대중매체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였다. 국내외 현황 및 참고문헌을 분석한 후, 2021년 9월~12월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전문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 다영역에서의 전문가와 총 10회(자문회의 5회, 언론 간담회 1회, TFT

12) Hong Jin Jeon et al., (2021).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law and media guidelines on copycat suicide of general population following celebrity suicides in South Korea, 2005–2017.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3)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국내 언론에 나타난 정신질환 관련 이슈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회의 4회)의 회의를 통해 개발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공동발표하였다.

나.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원칙

국의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과 국내 기존 연구된 자살예방 보도 준칙을 포함한 타 영역의 보도준칙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5개의 원칙과 각각의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표 3〉).

〈표 3〉 국내 정신질환 언론 보도 모니터링 수행 기관 현황

원칙	내용
1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합니다.
2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합니다.
3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습니다.
4	관련자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기사에 아래의 내용을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언론 모니터링 시행 계획

(1) 모니터링 양식 개발 및 수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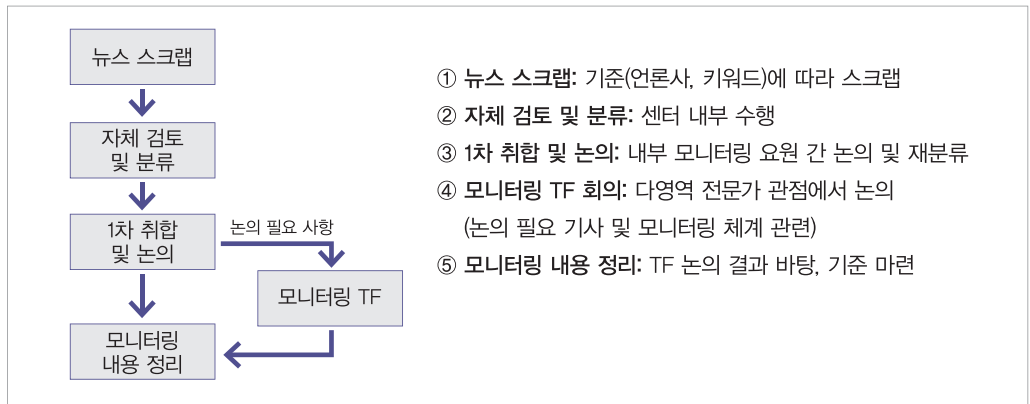
모니터링 양식 개발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인을 대상으로 총 3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 모니터링 양식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부터 모니터링 시행 중이다.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에 따른 언론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 교수, 정신과 전문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위원회, 언론인, 당사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지속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언론 모니터링 기준 및 시행 과정

정신질환, 정신병, 조현병 등을 키워드로 모니터링 과정을 계획하고,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적용해 봄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그림 2〉). 뿐만 아니라, 자살보호 권고 기준 3.0에서 포함시킨 1인 미디어 및 SNS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마련에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언론 모니터링 과정 제안



5. 한계와 향후 방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개발·배포하였으나, 이는 서울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그 사용과 홍보에서 한계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해 자살보호 권고기준과 같이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정신질환 보도준칙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통적 의미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아닌, 방송, 1인 미디어, SNS 등의 다양한 미디어와 함께,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또는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대해 갈 수 있는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경험과 자료들이 쌓인다면 모니터링의 체계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보도 가이드라인의 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하는 우리의 노력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누구나 편하게 정신건강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누리길 바란다.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 규제냐, 자유이냐를 넘어서

박찬경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개요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되는 바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혹시 이를 결정하는 자들이 악한이거나,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은 모든 시민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정치적 결정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사라지지 않는 의혹이다. 그 최근 판본 중 하나는 모종의 세력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독차지하고, 우리를 세뇌하려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모종의 권력이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종종 알고리즘이라는 권력수단의 박탈, 또는 알고리즘의 폐지라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알고리즘 권력’의 소유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공정위가 발견했듯 네이버가 뉴스, 동영상 추천을 조작하는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¹⁾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의 뉴스 배열을 금지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단순히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닌 구글이라는 더 큰 권력에게 옮겨갈지 모른다. 만약 포털의 권력을 공공 뉴스 포털로 대체한다면, 그곳 역시 배열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즉,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권력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나뉘어가고 있어, 이를 단순히 빼앗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아닐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한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고안된 EU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라 한다)²⁾은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DSA가 기술과 윤리, 매체와 정보 사이의 기술-사회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플랫폼 규제의 복잡성을 해결하려 했다는 본래의 목적성에 주목하여, 나름대로 제시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DSA가 가져온 정책 혁신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주요골자

DSA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명기된 권리들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DSA는 주로 경쟁 정책을 다루는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라 한다)³⁾과 달리,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사업자 규정과 그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최효정 (2021. 1. 12).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잡은 6인, 올해의 공정인 선정. <조선비즈>.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0081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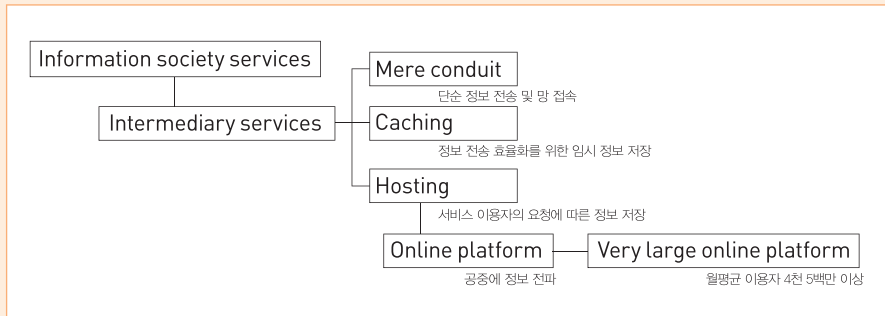
2) COM/2020/825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3) COM(2020) 842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가. 사업자 규정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능’과 ‘규모’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적 규제를 명기하고 있다(〈그림 1〉). 첫째, ‘정보화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는 Single Market Transparency Directive⁴⁾에 규정된 “원거리에서, 전기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대가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⁵⁾를 의미한다.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는 그 중에서도 단순 전달(Mere conduit) 서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포함하는 카테고리로 정의된다. 네트워크 기능의 작동 및 효율성을 위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전달, 캐싱 서비스와 달리, 호스팅은 이용자의 의도적 요청에 따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규정 요건이며, 여기에 공중을 대상으로 한 직접 정보 전파(즉, 최종 소비자에 도달함)가 이루어지면 이를 플랫폼으로 본다.

〈그림 1〉 DSA에 따른 정보화 서비스 사업 분류



DSA 사업자 분류 체계는 몇 가지 점에서 특수하다. 첫째, 인터넷 중개서비스에 대해 미 FCC가 커뮤니케이션법 Title I에 따른 부수적 관할권(ancillary authority)을 바탕으로 규정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로 분류하거나, 통신품위법(Decency Act)⁶⁾의 유명한 면책조항(Safe Harbor)이 단순히 “다

4) Directive (EU) 2915/1535

5) “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

6) 47 U.S. Code § 230 – Protection for private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른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언급한 자”⁷⁾로 규정하는 것, 또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⁸⁾하는 것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반대로,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특수규제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앱마켓사업자’ 등을 구분하거나 신문법⁹⁾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정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법들을 도입한 것과 달리, DSA는 근본적인 정보전송 방식과 기능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역시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으나 정보 유통의 매개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뉴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규제는 AVSMD¹⁰⁾에서, 앱마켓에 대해서는 The Omnibus Directive¹¹⁾ 등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셋째, 미국의 면책조항이 “외설 또는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DSA에서는 고려되는 책임범위가 불법정보(illegal content)로 더욱 넓은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책(conditional exemption)’을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 넷째,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등 다양한 의무가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들에게 부과되는데, 이 기준은 시장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10%이므로, 한국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DSA가 가장 많은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함에 있어 양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의 입법 원칙 중 하나인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적용한 결과로, DSA의 전문에

7)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신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10)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11) Directive (EU) 2019/21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s 98/6/EC, 2005/29/EC and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better enforcement and modernisation of Union consumer protection rules

는 이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EU에서의 공적 논의와 상거래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p.6). 즉, DMA와 같은 경쟁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더 큰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는 관점을 규제에 도입한 것이다. 사회적 책무는 시장지배력과 같이 양적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 의무를 갖는다는 점은 논쟁적인 부분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은 그 자체로 양적 규모에 따른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래 비례성은 규제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양적 규정을 도입한 것은 소비자 주권, 인권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기업 자율성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오는 비용이 상쇄될 것이라는 특수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법 정보에 대한 조치와 추가 의무

DSA 대부분의 조항들은 정보화 서비스 일반이 아닌, 중개서비스, 즉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 방식에 따라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고 있다.¹²⁾ 특히, 제2장은 중개서비스들이 세부 분류에 따라 갖는 유통 정보에 대한 차등적인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중개서비스의 세부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의 차등적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통 정보에 대한 조건부 면책 조항을 살펴보자(〈표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SA는 중개 사업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면책 사유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개 사업자의 차등적 책임을 규정한다. 단순 전달과 캐싱 서비스는 자동화된 기술과 계약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 분별할 필요가 없이 책임을 면하게 되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미인지나 인지 시 즉시조치를 바탕으로만 면책이 가능하다. 즉,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은 불법정보를 찾고, 특정하며, 삭제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 즉 스스로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거버넌스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¹²⁾ 제1조항: "This regulation lays down harmonized rules on the provision of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표 1〉 분류에 따른 조건부 면책의 요건¹³⁾

단순 전달	캐싱	호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송을 스스로 개시하지 않을 것 • 정보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 전송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 정보 업데이트 시 업계 표준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따를 것 •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위한 데이터 획득 시 관여하지 않을 것 • 정보의 원저장위치에서 정보가 삭제되었거나, 접속이 차단된 것을 인지하는 즉시 캐싱된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정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 • 정보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한 즉시 삭제 또는 접속을 차단했을 것 • 단,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하에서 불법 정보를 게시했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불법 정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면책 사유에 더하여, DSA 제3장은 중개서비스가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의 의무사항(due diligence obligations)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 역시 사업자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표 2〉).

〈표 2〉 DSA가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주의 의무사항(due diligence obligations) 요약

단순 전달	불법 정보 대응	투명성
중개서비스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삭제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연락담당자, 법적대리인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보고(수령한 명령 수,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수, 삭제에 대한 항의의 수, 콘텐츠 관리의 방식과 횟수 등)
호스팅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정보 신고에 대응하는 메커니즘 	
플랫폼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에 대한 항의 처리 시스템 • 분쟁에 대한 국가에서 인증하는 중재 시스템 • 신뢰 기반 신고자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 특히 위험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투명성 보고 의무(분쟁 수, 이용 정지 처분, 콘텐츠 관리를 한 자동화된 수단에 대한 정보) • 광고 투명성
대형 플랫폼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정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주기적 위험 평가 • 평가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의무사항 수행에 대한 외부 감사 •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 광고 투명성에 대한 추가 의무 • 정부의 평가와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공개 의무

13) 전제 요건 중 일부만을 요약, 자세한 분류 기준을 위해서는 DSA 제3-5조 참조.

먼저 불법 정보에 대한 조항들부터 검토해보면, 모든 중개서비스는 규제 당국의 정보 삭제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제8조). 이러한 과정들의 신속성을 위해서 연락담당자(point of contact)와 법률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제10-11조). 여기에 더하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용자가 불법 정보로 여기는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조치 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4-15조). 플랫폼들은 플랫폼이 취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제17조), 만약 이 분쟁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규제 당국이 인증한 법정 외 조정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제18조). 더욱 중요하게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구성된 신뢰 기반 신고자(trusted flagger)의 감시와 신고에 협조해야 한다(제19조). 즉, 조직된 외부 감시에 대해 열려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제21조). 즉,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제7조), 면책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에게는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제26조에 따라 대형 플랫폼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서비스의 기능이나 그 이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행하고, 그로부터 파악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제27조). 앞서 언급된 주의의무사항이 주로 정보의 불법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와 그에 대한 조치는 정보왜곡, 혐오표현, 차별과 같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즉,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을 협의 및 감독 아래 두는 일종의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 즉, DSA는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행위를 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Van Loo, 2020)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투명성 의무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을 의무로 부과한다. 중개서비스 전체에 부과된 기본 요건은 주로 불법 정보 처리의 사후적 보고에 불과하지만(제13조), 사업자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좀더 강력한 의무를 갖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조치¹⁴⁾에 대한 분쟁 조정 메커니즘 의무를 갖는 만큼, 이에 관한 정보도 투명성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용 정지 처분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제23-24조). 사후 보고뿐 아니라, 정보 배열을 위해 플랫폼이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투명성 의무들도 있는데, 첫째, 자동화된 콘텐츠 관리시스템의 스펙, 정확도에 관한 정보를 투명성 보고에 추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3조1항c호). 이는 본격적으로 정보 알고리즘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둘째, 이용자가 개별 광고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광고주, 특히, 광고 추천을 위해 이용한 주요한 변수들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제24조).

대형 플랫폼에게는 한층 더 강력한 투명성을 요구하여, 추천시스템의 주요변수와 이용자가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용 약관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고,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기반하지 않는 대체 옵션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제29조). 광고에 관해서도 추가 정보 공개 의무를 갖는다. 공중이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보관소(repository)를 운영하여, 개별 광고의 구체적 내용, 타겟팅한 사용자 그룹,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당 광고가 보여졌는지 등에 대해서 최소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제30조). 마지막으로, DSA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감사를 매년 스스로의 비용으로 받도록 하는 데서 더 나아가(제28조), 규제 당국과 인증된 연구자들이 DSA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하여(제31조)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의 메커니즘을 도입하려 하였다.

14) 제2조에서 불법 정보 또는 약관에 어긋나는 정보에 대한 탐지, 식별, 후속 조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3. 쟁점과 관련 시사점

DSA 발의 과정에서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EFA) 측 특위위원(shadow rapporteurs)으로 활동한 Alexandra Geese의 평가처럼, DSA는 앞으로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¹⁵⁾ 그러나, 앞서 살펴본 DSA의 조항들은 하나하나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이기에, 여전히 논쟁적인 조항이나 향후 해석의 여지를 위해 모호하게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U의 규제가 초국적 비즈니스에게 사실상 규준으로서 작동한다는 ‘브뤼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Bradford, 2020),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중 한국의 법안 및 정책 관련 논의 구도에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논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DSA는 ‘불법정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EU법과 개별 가입국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5항g호).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할 책무를 갖는 불법정보는 각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DSA와 같은 플랫폼의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제들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브뤼셀의 정책 싱크탱크 CEPS의 연구원 Clément Perarnaud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자나 성소수자의 발언 등을 불법화하는 것을 EU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혐오와 차별, 거짓정보에 대응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¹⁶⁾ 한국의 맥락에서 심영섭(2022)은 그간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위법의 정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분쟁 시 중재와 조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규제 기구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며, 그 판단 결과 역시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DSA는 유해성이 판정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15) The Newyork Times (2022, 4, 22). E.U. takes aim at social media's harms with landmark new law. URL: <https://www.nytimes.com/2022/04/22/technology/european-union-social-media-law.html>

16) 클레르망 페라르노 (2022, 6, 30). 신 EU 디지털서비스법. <르몽드>. URL: <https://www.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46>

의심할 만한 정보를 정부에게 알리거나(제21조), 불법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 왜곡, 혐오, 차별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대형 플랫폼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제27조), 플랫폼들이 전송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 기업에게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일 수 있으나(Van Loo, 2020), 플랫폼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한 정보 통제를 가하는 등 지나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Perarnaud, 2022). 또한 유해정보는 여러 플랫폼을 가로질러 확산되기 때문에, 해당 정책 목표를 플랫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기구를 통한 상호 협조와 기술 공유 등을 필요로 하는데(Gorwa, 2019), 이는 DSA가 일부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통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정성, 차별 등과 관련된 조항들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의 위험 평가와 자발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적 모호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의 공정성, 차별, 혐오표현, 정보왜곡 등과 같은 핵심적 사회문제들 중 많은 부분은 플랫폼과 규제 당국 사이의 사안별 협상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정치적 논란 속에서 판단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정책 기관의 판단과정에 어떻게 신뢰성을 보낼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넷째, 이용자의 10%라는 대형 플랫폼의 분류 기준의 자의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BEUC, 2021).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의 대부분이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많은 책임을 지는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의 맥락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추가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하나의 서비스로 분류하여 이용자 수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한만큼,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시도되었던 부가통신시장 시장획정과 유사하게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을 여러 각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들을 찾는 것을 다시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DSA가 온라인 플랫폼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모호하게 남아있다. 대형 플랫폼에게 부과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조항(제29조), 광고 추천 관련 기록에 대한 보관소를 설치하는 조항(제30조), 그리고 규제 기관과 연구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 관한 조항(제31조)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얼마만큼의/어떤 방식의 투명성이 실질적인 책임성(accountability)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다. 예컨대, Selbst와 Barocas(2018)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투명성 확보가 이용자의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한 자각(awareness)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이용자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학습이나 이의제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하여 '해석가능한 기계학습(xML/XAI)'이라는 공학적 해결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법학적 논의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투명성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이러한 기존 논의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가된 연구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 역시 몇몇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그 인가 방식의 폐쇄성, 그리고 외부의 검토를 위한 공개된 데이터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진 바 있다(Bruns, 2019). 예컨대 DSA는 플랫폼 기업이 특정 정보가 기밀에 해당한다면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제31조5항), 이러한 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나 원칙을 밝히고 있지 않다.

4. 결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메시징앱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 흥미를 위해 진실과는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댓글 조작 등이 여론과 한국의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이 유럽에 비해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 과정은 다소 우려스럽다. 규제안을 둘러싸고 한 측에서는 여론의 향방에 책임이 있는 포털을 일벌백계하려는 의도로 DSA를 전거로 삼는가 하면, 다른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며 모든 규제 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그러나 DSA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결코 전무 아니면 전부의 문제일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DSA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단지 내적 정합성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예컨대 허위정보, 차별, 혐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 규정을 통한 민주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소

한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선택된 것이다(비례성의 원리). 또, 거버넌스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정책 당국과 기업 사이의 통제, 자율규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학계와의 협조, 시민단체의 역할 등 (국가 가 아닌)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역시 ‘사업의 현실과 정책 목표에 비추어 무엇이 적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법 바깥을 아우르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 수단들 중 상당수가 해석과 협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담론 투쟁(Gillespie, 2010)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법안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2021 September 4). The Digital Service Act Proposal: BEUC position paper (BEUC-X-2021-032).
- 2) Bradford, A. (2020). 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3) Bruns, A. (2019). After the ‘APocalypse’: Social media platforms and their fight against critical scholarly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2(11), 1544–1566.
- 4) Gillespie, T. (2010). The politics of ‘platforms’. *New media & society*, 12(3), 347–364.
- 5) Gorwa, R. (2019). The platform governance triangle: Conceptualising the informal regulation of online content. *Internet Policy Review*, 8(2), 1–22.
- 6) Selbst, A. D., & Barocas, S. (2018). The intuitive appeal of explainable machines. *Fordham L. Rev.*, 87, 1085.
- 7) Van Loo, R. (2020). THE NEW GATEKEEPERS. *Virginia Law Review*, 106(2), 467–522.
- 8) 심영섭 (2022. 2. 23). 포털의 내일-자율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사이에서 균형잡기.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기획연속세미나-2차>.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팟캐스트 ‘나꼼수’의 멤버였던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씨(이하 ‘청구인들’)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대, 경희대 정문 앞 등에서 ‘나꼼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면서 “누가 진짜 이 지역구민을 위하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껏 짝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

검찰은 청구인들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중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우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

1심 형사 재판부는 김어준, 주진우 두 방송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

금 9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들의 행위가 ① 선거기간 중,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③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료하였다. 항소하더라도 당시 선거법상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셈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고자 1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 되면 당사자에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중 청구인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야유회’는 제외하고, ① 선거기간 중,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③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법률 내용에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2.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현재에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주장이었다. 선거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임이나 집회를 열게 되면 바로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법 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광범위한 처벌과 선택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둘째,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 의사형성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본권이고, 특히 민주 정치의 요체인 선거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기본권인데, 선거운동 기간 중 일괄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집회나 모임에 수반되는 매수행위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별도의 위법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집회나 모임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집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현재의 판단

(1)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

현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 ②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라는 부분을 나누어, 그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현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에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 유형을 미리 예상해 일일이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 사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통상적인 법해석 등을 통해 불명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현재는 이와 같이 전제한 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와 선거와 관계 없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진 행위'를 구분할 수 있고,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현재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칙 위반은 없다고 보았다.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의미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나열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나 모임'의 개척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2)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그 심사기준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는 위반된다고 보았다. 심판대상조항이 침해하는 집회 및 정치표현의 자유는 특히나 그 보호필요성이 중대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그동안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

서”(2000헌바67, 2014헌가3 등),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협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2000헌바67, 2014헌가3 등)고 판시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2001헌마710, 2007헌마1001 등),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2011헌바163 등)라며,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요체이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는 이 두 개념(‘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그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렸다.

(3) 구체적 위헌결정의 이유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현재는 ▲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의 주체가 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 나아가 개최를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이 ‘모든’ 집회나 모임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합법 집회인지, 불법 집회인지, 옥내 집회인지, 옥외 집회인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규정은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표면적으로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특정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와 함께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나타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비교적 폭넓게 보고 있다.

현재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기간 중 특정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표현행위, 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타나는 집회,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조치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상 의견의 대립은 불가피하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경우 지지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특히 선거과정 중 가치충돌은 필수불가결한데, 구체적 위협이 우려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협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법을 규정하였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었다.

현재는 과거 금권선거 등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 심판대상조항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수긍이 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 후보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고,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 금전적 이익이 집회 참여의 대가로 수수된 사례가 있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후보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후보자나 유권자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는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현재도 방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하는 선거기간 중 평소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고, 나아가 집회나 모임에서 나온 표현 중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지었다.

(4) 구체적 위헌결정의 이유 –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다(‘법익의 균형성’의 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차별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집회나 모임의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집회나 모임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3. 현재 결정에 대한 검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현재는 6 :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집회, 모임을 제한할 뿐 그러한 목적이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는 허용한다는 점, 여전히 금권 선거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루어낸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형식 불문 일체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다수의견의 지적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근간이다. 특히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지칭되는 선거기간 중에 그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는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선거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2〉 “비판하면서 해명할 기회도 안줘...”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 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지난 여름호에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나쁜 뉴스들에 대한 칼럼의 시리즈 첫 회를 게재했다. 허위·과장·왜곡의 제목에 관한 것으로 그 사례들과 함께 관련 보도윤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글을 읽은 지인 중 한 두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하지 않겠소?”

사실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여름호 글에서도 답변에 해당하는 설명을 했지만, 내가 독자들에게 와닿게 설명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번 가을호 글의 앞 대목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시리즈물이야말로 바로 그 대안에 해당한다. 가짜뉴스와 불량뉴스(그 전체를 나쁜 뉴스라고 칭하기로 한다)에 대한 식별안목을 기르는,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강좌인 셈이다.

미국의 팩트체크 연구기관이 내놓은 ‘가짜뉴스 판별하는 8가지 방법’이 잘 알려져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뉴스 사이트의 목적이나 연락처 등 출처를 확인하라 ▲전체 내

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별하기 ▲관련 정보가 뉴스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근거를 확인하기 ▲오래된 뉴스를 재가공한 건 아닌지 날짜 확인하기 ▲뉴스 내용이 이상하다면 풍자성인지 의심하기 ▲자신의 평소 가치관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선입견 확인하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매우 타당한 제안이다. 하지만 그 요령의 대부분이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금방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탐색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한 매체에서도 많은 기사를 훑어내려가며 읽는 독자들이 언제 이같은 작업을 일일이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만하다고 본다.

필자는 나쁜 뉴스 식별 기준을 저널리즘의 수칙인 보도윤리(신문윤리 실천요강)로 삼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다룬 사건들을 윤리요강별로 분류해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자든, 일반 시민이든 이렇게 보도윤리를 터득하고, 관련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음 대하는 뉴스일지라도 어떤 윤리요강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 알게 되면 뉴스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보도윤리와 그 사례에 대한 공부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중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교육내용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돼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가르쳐야할 것이 리터러시 교육인데,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 마치 사회학 학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보도윤리와 그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재나 교사 양성 등 교육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말하자면 필자는 이 칼럼을 그러한 기회의 하나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름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사건 중 매체들이 매우 빈번하게 위반하는, 즉 허위·과장·왜곡을 일삼고 있는 ‘제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윤리요강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아마도 그 글을 읽어본 이라면 누구나 어떤 뉴스기사의 제목을 보더라도 옳게 뽑은 것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 중 제목 못지않게 많은 매체들이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비판대상자에 대한’ 답변의 기회 제공’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답변의 기회는 다시 말하자면 반론의 기회 또는 해명의 기회이기도 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방어권리가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천부의 권리이며 동시에 정당방위이다. 당연히 법률에도 그 근거가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중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준다. 노사관계에서도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비록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로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언론보도는 당연히 이같은 기본 인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물론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 중에도 공인이나 공공의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언론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따른다(물론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언론윤리는 비판 기사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에는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②(반론권 보장)항목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많은 매체들이 이같은 윤리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심리를 하다보면 “이런 보도윤리에 대해 애당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 때가 많다. 비판하는 대상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문·방송 등 이른바 레거시 매체(전통 매체)나 신생 인터넷 매체나 마찬가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기사심의위원회가 올들어 각각 매월 심의한 결과를 보면 답변의 기회나 반론권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소수이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피신청 매체 중에는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흔했다. 이같은 매체들은 애당초 취재과정에서 비판대상자의 해명을 받아 보도기사에 반영했어야 마땅한데도 이같은 기본책무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언론중재위까지 와서야 반론제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음은 보도기사에서 비판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언론중재위에서 반론제재로 결정이 난 사례다.

▲S매일은 두 차례에 걸쳐 T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8월 17일자 사회면 「쩐(錢)의 위력에 OO리 주민 불안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와 8월 18일자 사회면 「폐기물 반대 대책 주민 엽총 차량 테러에 주민들 분노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S매일은 이 기사들을 통해 “T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 반대 측 주민들에게 사후보상과 금전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찬성 주민들이 반대 측 주민의 차량을 엽총으로 테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반대 측 주민들에게 금전적 회유나 사후 보상을 약속해 설득했다는 내용은 소문이 돌기는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엽총 차량 테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총기에 의한 테러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였다.



그런데도 S매일은 이를 사실처럼 보도하면서도 T업체의 해명은 게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제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못박았다. 결국 S매일은 T업체의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21년 5개 온라인 매체에 대해 연예인 박수홍씨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내렸던 사례이다.

- ▲ 스포츠D 「박수홍 진흙탕 폭로 “탈세·낙태 몇 번” 제목의 기사
- ▲ S경제 「박수홍·친형 진흙탕 싸움…횡령 고소 이어 탈세·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H경제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스포츠S 4월 6일자 「“박수홍은 감성팔이” 가세연, 위장 취업·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M투데이 「가세연 “박수홍 여친이 친형 고소 작전 짚다…클럽서 만나” 제목의 기사

이들 기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친형과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 매체는 박수홍의 형 횡령 의혹 폭로와 관련해 가세연 측이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짰 것”이라며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벽하게 선동했다”고 주장하는 등 박수

홍 여자친구에 대해 폭로한 의혹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또 위장취업과 탈세, 낙태 전력 등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가세연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마치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낙태를 한 것처럼 묘사해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도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사는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에 사생활 폭로의 대상인 박수홍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음은 2022년 한 인터넷신문이 비판대상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인터넷신문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제재를 받은 사례이다.

▲K연합신문 「대한항공 자폐인 탑승 거부」 사연에 엇갈린 누리꾼 반응」

이 기사는 대한항공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폐인 승객의 비행기탑승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다루었다. A씨가 자신의 네이버블로그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폐아인 아들을 데리고 탑승수속과 검색을 마치고 탑승했는데 승무원이 내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K연합신문은 이를 그대로 게재했다. 이처럼 블로그에 올라온 일방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의 해명을 들어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연합신문은 이같은 보완취재없이 블로그의 내용만 신문에 게재했다.

매체가 늘어날수록 저널리즘의 제1수칙인 ‘사실 확인’ 또는 ‘사실 검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확인 중에서도 답변의 기회 제공이나 반론권 보장 같은 기본적 인권 사안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대해서만 알고,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매체와 기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갈수록 흐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역시 사실이 실종되고 저널리즘은 갈수록 붕괴해가는 현상의 한 단면이다.

이같은 실태를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일반시민들에 앞서 우선 기자들을 상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악의' 논쟁 사라 페일린 v. 뉴욕타임스 판결과 의의

문영은

아리조나 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박사후 연구원

2022년 2월, 공화당 부통령 후보자였던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5년 간의 명예훼손 소송 끝에 패소했다. 사건은 2017년 뉴욕타임스의 사설 '미국의 치명적인 정치(American's Lethal Politics)'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스티브 스캘리츠를 포함한 6인이 하원 친선 야구경기 연습 중 좌파 극단주의자인 제임스 호지킨슨에 의해 충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충격사건이 미국 혐오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1년 하원의원이었던 개비 기퍼즈가 중상을 입은 충격사건을 언급하며, 세라팩(SarahPAC, 세라 페일린의 정치 활동 단체)이 떨어뜨려야 할 민주당 의원 20명의 지역구를 지도에 표시한 것을 두고, 이러한 행동은 페일린이 기퍼즈 의원을 정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일린 전 주지사와 2011년 기퍼즈 충격사건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사실을 수정하고 사건 간 연관성이 부정확했음을 인정하였다. 제임스 베넷 논설위원도 "편집 과정에서 과도한 해석이 들어갔다"며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일린은 사실이 명백하게 악의적 동기와 감정(animus)으로 작성되었다며 수백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뉴욕 맨해튼 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페일린이 뉴욕타임스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한 것

이 재판부의 주요 판결 이유였다. 소송을 기각한 제드 래코프 판사는 “현실적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법의 기준은 매우 높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페일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일린 대 뉴욕타임스 사건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소위 ‘입막음 소송’이라 불리는 SLAPP 법(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과 반(反)전략적봉쇄소송법(Anti-SLAPP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령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를 제기할 경우, 기자 및 평론가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언론이나 위협 또는 반대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기 소각하(dismissal)를 허용한다. 미국은 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 기준,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32개에서 Anti-SLAPP법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22일, 뉴욕주 상원은 기존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만을 대상으로 한 Anti-SLAPP법의 sections 70-a and 76-a of the New York Civil Rights Law를 보다 확대하여 “공익 문제와 관련된 헌법상의 언론 자유권 행사를 촉진하는 기타 합법적인 행위”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뉴욕의 Anti-SLAPP법령은 명예훼손과 같은 주장에 대해 현실적 악의의 자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어떤 [모욕적인] 의사소통도…사실 확인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that any [defamatory] communication…was made with knowledge of its falsity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N.Y. Civ. R. L. § 76-A(2).)”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익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모든 원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즉, 뉴욕주의 개정된 Anti-SLAPP법에 따르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연방법이 아닌 오직 주법만으로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 측은 페일린 소송건을 연방법뿐 아니라 주법의 문제로 간주해 Anti-SLAPP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심을 요청했다. 래코프 판사는 이를 승인해 개정된 뉴욕주의 Anti-SLAPP법령을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즉, 페일린이 연방헌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을 주법에 따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사라 페일린 판결은 언론이 공인을 비판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거나 심지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원칙은 미국에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인, 유명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가 제기됐을 때 언론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해왔으며, 후속 판결들은 단순 공직자를 넘어 모든 공인 혹은 소위 제한된 공인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

페일린 사건에서 쟁점인 현실적 악의는 1964년 ‘NYT 대 설리번’ 판결에서 비롯됐다. 1960년 앨라배마주에서 체포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해 활동하던 흑인인권단체는 뉴욕타임스

에 게재한 광고에서 킹 목사가 그간 일곱 번이나 체포되었고 경찰이 총기로 무장한 채 학교 식당까지 폐쇄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시의원이자 경찰서장이던 설리 번은 경찰이 킹 목사를 “일곱 번이 아닌 네 번 연행”했으며 대학을 포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64년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의 경우 피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며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임을 밝혔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대신에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오류가 있는 표현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하여 오류가 있는 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현실적 악의 원칙을 마련하여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서구국가보다 강력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불려왔는데, 사실상 현실적 악의의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대다수 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Aimonetti & Talley, 2021). 이렇게 확립된 기준은 지난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순 명예훼손법을 넘어 선거법과 노동법, 사생활 보호법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 및 적용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도 언론뿐 아니라 시민 기자, 인터넷 블로거도 언론으로 간주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에 관한 변화의 목소리 또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연방대법원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다. 그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현실적 악의 원칙에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는 단순하게 얼굴이 알려진 비정부 행위자들, 즉 단순 공인에 대해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은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이다. 배우 캐서린 맥키가 1974년 코스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자 코스비의 변호사는 편지를 통해 맥키의 주장이 거짓이라 답변했는데, 이 서한의 발췌본이 유출되어 여러 뉴스매체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맥키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코스비를 고소했다. 두 차례의 하급심에서 법원은 맥키는 얼굴이 알려졌고 영향력이 있는 ‘제한된 목적의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이므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유효함을 근거로 소송은 기각됐다. 맥키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그녀를 제한된 목적의 공인으로 간주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재심리를 거부했는데,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에 대해 14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 판결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55년 역사의 이 원칙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현실적 악의를 고수해 온 법원의 결정은



헌법을 가장한 정책 주도 결정이었다”며 현실적 악의 원칙이 설리번 사건과 이후의 명예훼손 소송의 판결들의 기준점으로 작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수정헌법 제1조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경쟁적 가치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체 규칙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본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헌법이 자체적으로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Williams, 2019).

2021년 7월, 닐 고서치(Neil M. Gorsuch) 판사도 이에 합류했다. 그는 설리번 사건과 그 이후에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따른 판결들이 ‘선의의 산물’이었음을 인정했지만, 1964년 확립된 현실적 악의 원칙과 공인이라는 개념이 현재와는 동떨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졌음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중심의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원칙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엇이든 출판할 수 있고 이는 어디에서나 유통될 수 있다. 고서치 판사에 따르면, 현대의 언론사는 정확한 보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은 너무 많은 자유를 보장받게 됐는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실적 악의 규칙이 지금은 일반 미국인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

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실적 악의의 기준이 효과적인 면책 특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요지다. 둘째, 공적 인물 혹은 제한적 목적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범주 역시 변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에 접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고, 더이상 제도적 언론에 의존하여 청중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 자체가 평범한 시민을 비자발적인 공인으로 즉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고서치 판사는 설명했다.

이에 관한 논쟁은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윌리엄 대학 데이비드 로건 교수는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많은 거짓 증언에 쌓여 곤경에 처해 있음을 주장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무작위 음모 평론가들의 궤변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한된 공인이라는 낡은 개념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법학 교수인 데이비드 맥고원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법학 교수인 제네비브 라키에(Genevieve Lakier) 교수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McGowan, 2021; Lakier, 2021). 라키에 교수는 1964년 당시 공론장에서 공적인 토론을 하는 주체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생산자로 인식되는 언론사였으나,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있고 누구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오늘날에는 “선량한 언론인보다 일반적으로 무책임하고 악의를 가진 개인을 보호하는 데 더 유용”(Akst, 2022) 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설리번 판결 당시, 소송 당사자 중 누구도 이 규칙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설리번 사건 담당 판사는 서기관들이 증석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이 규칙이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그 기준은 결과적으로 언론사에게도 좋은 규칙이 아닌데,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할 때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동기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뉴스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예훼손 소송은 소송비용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도 단지 부주의한 거짓으로 명예가 훼손된 공인의 원고들이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라키에 교수는 현실적 악의 원칙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손해배상 상한제를 잠재적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 기관들을 폐업시킬 수 있는 위협을 제한하기 때문인데, 주 및 연방 수준 모두에서 정치적 동기 부여 소송으로부터의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통해, 인터넷 시대에 개인의 평판에 대한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라키에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



이 제소될 주의 지역 관할과 관련된 규칙(venue rule) 등을 통해 언론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주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명예훼손 재판의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가 하나 둘 높아짐에 따라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는 중이다. 대표적인 현실적 악의 원칙의 옹호론자인 미디어법정보센터 MLRC(Media Law Resource Center)는 ‘필수적인 선례(essential precedent)’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실적 악의 원칙은 면책 특권이 아닌, 언론의 진실을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위협적 소송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공격과 위협은 과거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하였기에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포덤 대학의 마이클 셰퍼 교수는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을 막는 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짜뉴스의 발원지를 추적해보면 주로 미국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chafer, 2022). 설리번 판결은 이러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기존의 판결을 뒤집기보다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현실적 악의 원칙을 포기하기보다 진실된 뉴스 조직과 언론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서치 판사의 주장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결코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국한된 적이 없고 정보와 의견의 수단을 제공하



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Gertz v. Robert Welch, Inc.’나 ‘Philadelphia Newspapers v. Hepps’와 같은 사건들에서 언론이 피고로 설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규칙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해 진실된 뉴스 조직과 언론인을 보호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악의적 행위자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상의 자유 시장이론(Marketplace of ideas)을 언급하며 공론장은 늘 허위와 진실이 싸울 수밖에 없기에 가능한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evine와 Wermier(2019) 역시 토마스 판사의 현실적 악의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서, 1735년 뉴욕 위클리 저널 발행인 John Peter Zenger가 당시 영국 식민지 총독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체포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영향을 준 사례를 놓친 오류를 범했다며, 현실적 악의는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아닌 헌법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판결의 옹호론자와 반대론자 양측의 팽팽한 대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실적 악의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적, 문화적 토대를 갖춘 미국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현실적 악의 개념을 개정하거나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운명 이자 근간이었던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Akist, D. (2022, 3, 23). I Can See Actual Malice From My House: Palin's Failed NYT Defamation Suit and the Debate Over the Sullivan Standard. <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URL: <https://journals.library.columbia.edu/index.php/lawandarts/announcement/view/512>
- 2) Lakier, G. (2022, 2, 11). Is the legal standard for libel outdated? Sarah Palin could help answer.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2/02/03/sullivan-nyt-palin-free-press/>
- 3) McGowan, D. (2021). A Bipartisan Case Against New York Times v. Sullivan, J. Free Speech L., 1, 509.
- 4) Sanders, A. K., & Von Kreisler, K. (2022). Is Defamation Law Outdated? How Justice Powell Predicted the Current Criticism?. *First Amendment Law Review*, 20 (1). Online First.
- 5) Schafer, M. (2021). In Defense: New York Times v. Sullivan. *Louisiana Law Review*, 82 (1), pp. 82-160. URL: <https://digitalcommons.law.lsu.edu/lalrev/vol82/iss1/8>
- 6) Tebo, M. (2021). Is the Supreme Court's most famous press freedom ruling at risk?. *Gateway Journalism Review*, 50(362), pp. 10-12.
- 7) Williams, P (2019, 2, 19). Justice Clarence Thomas criticizes landmark Supreme Court press freedom ruling. <NBC News>. URL: <https://www.nbcnews.com/politics/supreme-court/justice-clarence-thomas-criticizes-supreme-court-landmark-press-freedom-ruling-n973176>.

가을은 바이올린 선율처럼

박종권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추풍(秋風)은 목덜미 솜털이 알아챈다

가을은 목덜미로 온다. 문득 청량한 바람이 스치며 목등을 타고 흐르던 땀방울을 흠친다. 솜털이 부스스 일어난다. 바야흐로 가을 더듬이 추촉(秋觸)이다. 질푸르던 플라타너스가 웬지 힘이 없다. 이파리 끝이 어느덧 누렇다. 그렇지, 흠으로 돌아가려면 흠 색깔로 갈아입어야 하겠지. 추색(秋色)의 궁극이겠지.

피고지고 또 피던 무궁화가 진 자리에 들꽃이 핀다. 국화는 봄날 소쩍새 울음소리를 기억할까. 단풍은 화수분을 재촉하고, 황국(黃菊)은 추향(秋香)을 날린다. 땡벌 아래 지겹던 매미의 울음소리가 푹 끊긴다. 대신 휘영청 달빛 아래 귀뚜라미가 노래한다. 보글보글 청국장, 탕탕탕 도마 소리에 추성(秋聲)이 깊어 간다. 사과와 배만 과일이나. 밤도 감도 과일이다. 밤이면 밤을 세어가며 굵고, 감 떨어지면 단감 땡감 감 잡아 집는다. 이 맛 저 맛 추미(秋味)는 비빔이 제 맛이다. 가을은 오감(五感)을 자극한다. '색성향미촉'이다. 눈에 귀에 코에 혀에 살갗에 닿은 가을인데 무언가 빠졌다. 마음이다. 팔딱팔딱 뛰는 심장이다.

옷을 벗은 나뭇가지에 바람이 인다. 한때 손톱만했던 양증맞은 은행잎도 푸르름을 잃었다.

황금빛 자태마저 빛을 잃고 떨어진다. 빈 가지에 휘잉 부는 찬바람은 마치 채찍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너의 꿈이 꽃피던 봄날은, 너의 가능성이 무성했던 여름은 과연 결실을 맺었느냐?” 오감을 통과한 가을은 마침내 가슴에 닿는다. 국화 향이 흩어진 자리에 서리가 내린다. 그렇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가을이 가는 거다. 반야심경도 가르친다.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라고. 본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그래서 더 슬픈 계절일까.

낙엽 지는 가을의 바이올린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폴 베를레노도 가슴을 파고드는 가을의 느낌을 알았다. “가을날, 바이올린의 기나긴 흐느낌이 내 가슴 엔다.” 그를 대표하는 시 ‘가을의 노래(Chanson d'Automne)’는 이렇게 시작한다.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진 나무에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소리를 바이올린 선율로, 기나긴 흐느낌으로 표현했다.

이 시가 유명세를 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신호로 쓰이면서다. 당시 연합군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에게 이른바 ‘D-데이’를 영국 BBC방송을 통해 알렸는데, 암호가 ‘가을의 노래’였다. 첫 세 줄(가을날/바이올린의/기나긴 흐느낌)은 상륙작전이 2주 이내 실행된다는 뜻이다. 이 암호는 1944년 6월 1일 방송됐다. 다음 세 줄(단조로운/초취함으로/내 가슴 엔다)은 작전이 48시간 이내 실행된다는 뜻이다. 6월 5일 23시 15분에 방송됐다. D-데이는 바로 다음날 6월 6일이었다. 이 날이 우리에게서 현충일이지만.

한여름에 ‘가을의 노래’가 암호로 선택된 이유는 모른다. 아마도 특이한 내용이라면 당시 독일의 암호분석반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좀더 포장한다면, 전장의 비참함과 덧없음이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구르는 낙엽’처럼 느껴졌을까. 이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가을이 피아노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가냘프게 떨리는 선율의 바이올린과 매칭된 것 말이다. 그런데 베를레노는 왜 낙엽 지는 가을에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여기에는 애잔한 스토리가 전해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7년 프랑스 국왕의 초대로 파리에 갔을 때다. 궁정에서는 초기 형태의 실내악이 흘렀다. 당시의 주력 악기는 비올(Viol)과 목관악기, 프랑스에서는 끌라브생(Clavecin)이라 부르는 하프시코드 등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피아노는 1709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가 하프시코드를 개량해 만든다. 환영 파티가 끝나고 다빈치가 궁정을 떠날 때다. 한 젊은 여인이 마차를 가로막고 엎드린다. 비올을 연주하던 궁정악사이다. 그는 “아버가 악기를 제작하는 악공이다. 하지만 후원자가 없어 필생의 악기를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재력가에 예술도 잘 아시니 후원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간청했다. 다빈치는 선뜻 후원금을 건넸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다빈치가 파리를 다시 찾았다. 환영 리셉션을 마치고 귀가할 때다. 까마득히 잊었던 여자 악사가 나타나 과거 후원금을 일깨운다. 그녀 안내로 조그마한 아틀리에에 도착했을 때, 파리한 얼굴에 수척한 악공이 낯선 악기를 내보였다. 그가 한 곡을 시연하는데, 선율이 너무나도 구슬뿔다. 다빈치가 물었다. “왜 이다지 슬픈 음색인가.” 악공이 답했다. “저의 인생 말년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제작했기 때문일까요.”

이 악기가 바로 바이올린, 프랑스어로 비올롱이다. 다빈치도 이듬해 1519년 세상을 떠난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화를 아는 베를레느이기에 ‘가을의 노래’에 바이올린을 시상(詩想)의 재료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다. 푸르던 잎새 하나 금빛으로 물들면서 가을은 시작한다. 낙엽 한 잎 떨어지며 가을은 깊어가고, 쌓인 낙엽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구르면서 드디어 겨울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가을날 시계탑에서 시종이 울리면, 문득 지난날을 생각하곤 눈물 짓는 것이다.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던 잔인한 4월, 온갖 꽃을 피우며 향기가 진동하던 오뉴월,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답다던 여름, 그리고 열매와 낙엽이 교차하는 가을이 아닌가.

씨앗을 품은 열매는 화초의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푸르름을 황금빛으로 갈무리한 이파리가 낙엽으로 떨어져 덮는다. 화초는 속히 사위어 씨앗의 거름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못한 화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이파리는 보듬고 덮을 ‘희망’이 없다.

베를레노도 그랬을 것이다. 어리고 젊은 청춘과 뜨겁게 불타오르던 중년을 넘기고 가을의 북판에서 시계소리를 문득 들었을 때 말이다. 낙엽 진 나뭇가지에 ‘휘잉~’하고 바람이 불 때, 가슴을 후리는 채찍소리로 느꼈을 것이다. 그 찬란한 봄과 생동하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아마도 다빈치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고 탄식한 깊은 회한을 가을과 바이올린에 담은 것이 아닐까.

가을을 상징하는 시가 ‘가을의 노래’라면, 가을을 알리는 노래는 프랑스의 영화배우이자 가수 이브 몽탕이 부른 ‘고엽(Les Feuilles Mortes)’이 아닐까. 그가 남(男)저음 목청으로 읊조리는 서두는 뜻을 모르는 청춘들에게도 로맨틱하게 다가온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랑을 속삭였던 연인은 떠났다. 그와 나눴던 사랑의 추억은 낙엽이 되어 쌓인다. 이마저 북풍이 망각의 밤으로 쓸어간다. 간절히 바라는데, 부디 나를 기억해 주오. 하지만 세월은 추억도 미련도 지워버리는 것을. 백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이 파도에 씻겨 가듯이.”

우리말 제목은 고엽(枯葉)이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사엽(死葉)이다. 아마도 유럽인의 의식에선 떨어진 나뭇잎은 더는 희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인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낙엽은 죽음이



아니다. 자신의 DNA를 간직한 씨앗을 품어 북풍한설로부터 보호하고, 어느 봄날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스스로 썩어 영양분이 된다. 새로운 생명의 길잡이인 거다.

“시몬~”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시가 레미 드 구르몽의 ‘낙엽(Les Feuilles Mortes)’이다. “나무 잎새 저버린 숲으로 가자”로 시작하는 시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를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되묻는다. 아마도 자신에게 묻고 있겠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던가. “낙엽의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는 감정은 스스로 해체되며 적절한 위치의 모양을 찾아가는 낙엽의 행로를 이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시인은 늦게나마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며 자연의 순행을 그윽하게 응시한다.

봄꿈 꾸며 흙으로 가는 커피 향 낙엽

베를레느의 가을이 후회에 가슴을 쥐어뜯고, 이브 몽탕 노렛말의 원작자 자끄 프레베르의 고엽이 망각의 밤에 안타까워하며, 구르몽이 낙엽을 밟으며 추억에 잠긴다면, 우리의 김남조 시인에게 가을은 그저 괴로움이였다. 그는 시 ‘가을’에서 저물도록 낙엽은 지는데 “여윈 손가락으로 가슴을 뒤져 무엇을 더 버리라는 거냐”고 외친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 하나가 가시 돋친 밤송인 양 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가을은 괴롭다는 것일까.

그랬던 시인은 세월이 흘러 괴로움을 고마움으로 승화한다. 2018년 ‘지금 다시 가을’에서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 부시어 과분한 거 아닌지요.”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한다.

고은 역시 깨달음과 초극의 가을을 노래한다. 그는 ‘가을 편지’에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다”라고 잔잔히 되뇌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라면서, 그러면서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고, 낙엽이 흩어진 날 헤메이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했다. 이 시의 정점은 낙엽이 떨어지고 흩어진 후 아예 ‘사라진 날’이다. 외로운 여자도, 헤메이는 여자도 아닌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한다. 도(道)를 구하려 홀로 외롭게 정진하다가, 깨달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그 문턱을 넘어 염화시중 미소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하나의 계송(偈頌)처럼 다가온다. 중생에게 그저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으로 감각되는 가을인데, 고은은 ‘뜰 앞의 잣나무’로 실체를 보여준다.

물론 이효석은 낙엽을 태우며 커피 향 한 모금, 씩씩하게 오늘을 보내고 또 하루를 준비한다. 그는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벗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는 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복판에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긴다는 거다.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가을을 생활의 시절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버린 낙엽의 재를 죽어버린 꿈의 시체를 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낙엽을 태워버리는 불꽃의 덕을 찬미하기까지 한다. 인간에게 불을 전해 준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리면서,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도 가을이 마뜩찮았던 모양이다. 그의 수필 ‘정원 일의 즐거움’에서 여름이 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시 ‘가을의 시작’에서 “머지않아 나무는 헐벗고 정원은 텅 비겠지”라며 아쉬워한다. 유년의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은 더 이상 그 시절의 기쁜 빛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아, 사랑이여. 경이롭던 열정이여. 수년간 쾌락과 노력으로 내 피 속에 늘 타올랐던 것이여. 오, 사랑이여. 그대 역시 시들어 가려는가.” 신록과 청춘이야 누구라도 예찬(禮讚)하지만, 타오르는 단풍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비기랴. 서쪽 하늘에 드리운 구름 무리를 불태우는 황금빛 노을에 비기랴.

편지를 쓰고, 늦기 전에 사랑할 일이다

가을은 모이는 계절이다. 한가위가 그렇고, 서양의 추수감사절이 그렇다. 모여 살아야 가족이다. 사랑의 기초 단위 말이다. 하지만 청춘에게 가을은 헤어지는 계절이다. 통속적일 만큼 천편일률이다. 유행가를 들어보면 안다.

가수 박인희가 낭랑한 목소리를 읊조리는 ‘목마와 숙녀’를 들어보자.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작별의 시간, 가을 바람 소리는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운다.

10월 말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사실 원작은 “9월의 마지막 밤을”이었다고 한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를 10월로 급히 바꿨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잘 조정됐다. ‘잊혀진’은 낙엽과 맥이 통하지 않나. 9월은 국화 꽃도 피기 전이 아닌가.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다는, 시인 서정주 표현으로는 ‘누님 같이 생긴 꽃’ 말이다.

아직 가을의 햇살이 남아 있다. 이파리는 황금빛으로 불타오르고, 꿈은 베개에 있으며,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지 않은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이따금 바이올린 선율의 ‘가을의 노래’도 듣고, 커피 향도 맡고, 술잔도 비울 일이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문자라도 보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할 일이다. 📧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7월 5일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제주중재부 송현경 중재부장(제주지법 부장판사), 허영선(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김치완(제주대 철학과 교수)·고창범(전 제민일보 논설위원)·김세희(변호사) 위원과 김대우 뉴제주일보 대표이사, 오영수 제주일보 대표이사, 이정식 제주MBC 대표이사, 이도영 KBS제주방송총국장 등 제주지역 4개 언론사 대표가 모여 지역 언론 현안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7월 1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제8회 지선 심심위는 총 12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65건, 후보자 시정요구 3건, 재심청구 3건 등 모두 7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선 심심위에서는 후보자간 보도량이 불균형해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 특정 후보자 홍보자료를 1면에 부각 보도한 경우 등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한 10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결정문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심의의결현황은 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 각종 통계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s://www.pac.or.kr/kor/pages/?p=72&b=B_1_6&cate=PD04)



2021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2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7월 31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판결 188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목할 만한 법리가 포함된 20개 판결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 정기간행물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ac.or.kr/kor/pages/?p=63&magazine=M01&cate=MA05&nPage=1&idx=1068&m=view&f=s=>



2022년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소개하는 특강을 비롯해 언론조정 사례, 언론소송 경향과 추세,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 언론 및 미디어관련 법률실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경남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9월 1일 경남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언론 현안과 변화한 언론 환경에 맞는 언론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는 경남중재부 전지환 중재부장, 정학구·권희경·박미혜·김영미 위원 및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대표이사, 경남신문 남길우 대표이사, 경남일보 고영진 대표이사, 연합뉴스 최병길 경남취재본부장, MBC경남 이우환 대표이사, KBS창원방송 하석필 총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는 8월 24일부터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짜뉴스의 확산, 혐오표현의 증대, 국가 차원의 정보 규제 등 코로나19가 아시아의 표현의 자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의 회복 방안 및 아시아의 인권,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최홍운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경기중재부), 심창섭(서울제1중재부), 왕미양(서울제5중재부), 박치형(서울제6중재부), 양정혜(대구중재부) 위원 및 조준원 사무총장, 최명진 조사2팀장, 이윤정 조사팀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획논문
주제

[초상권과 피해구제]



연구논문
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발간일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